

국제심포지엄

반인권 행위와 청소년

일 시 1995년 5월 17일(수) 오후 4~7시

장 소 금곡문화관(일신문고 12층)

발표자 박원순(변호사)

伊藤成彦(Forum Ninety, 일본중앙대 교수)

Helga Picht(Korea Verband, 전 훔볼트대 교수)

Linda Lewis(인류학자)

Etienne Mbaya(UN인권위원회 고문, 독일쾰른대학 교수)

Cleina Z. de Kofman(5월광장어머니회 소속)

주최 : 5·18 민중항쟁 15주년 행사위원회

주관 : 시민연대모임

후원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펼 치 는 글

광주민중 항쟁의 불꽃이 세차게 타오른지 15년. 해마다 오월이 되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망월동의 추모행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광주민중항쟁은 역사의 저편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합성은 해마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 피어나는 전달래 꽃망울로 선연하게 터져나와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광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동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년째 맞는 올해의 오월은 어느 해보다도 진상 및 책임자 규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 표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는 8월 16일로 광주 가해자들의 공소시효가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마감되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시민연대모임』에서는 작년『해외에서 보는 5·18』이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반인륜행위와 청산』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아픈 역사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반인륜적인 문제를 어떻게 청산하고 해결하였는지, 또한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하였던 역사적 사건들은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토론하고자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이 불씨가 되어 광주민중항쟁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고 진실하게 역사 앞에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갖고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여러분들을 마음속 깊이 환영하면서 뜻깊고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995년 5·18 광주민중항쟁 15주년에

시민연대모임 공동대표 오 수 성
윤 장 현
정 응 태

반인륜행위와 청산

박원순(변호사)

-광주는 계속되고 있다

伊藤成彦(Forum Ninety, 일본중앙대 교수)

-731부대(일명, 惡魔部隊)와 그 청산

Helga Picht(Korea Verband, 전 훈볼트대 교수)

-전후 독일의 과거청산문제와 신나치주의

Linda Lewis(인류학자)

-인류학 관점에서 본 시민항쟁

Etienne Mbaya(인권운동가, 독일쾰른대학 교수)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인권현황과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Cleina Z. de Kofman(5월광장어머니회 소속)

-아르헨티나에서의 반인륜적 행위와 그 청산

“광주는 계속되고 있다”

‘배상’¹⁾의 측면에서 본 광주항쟁²⁾

1. 서론

박 원 순(변호사)

1. 서론

-- 광주는 끝났는가?

너를 민주의 성지라 부르기엔
아직은 이르다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운 입으로
너를 위대한 도시라 찬양하기엔
아직도 우리의 입술이 무겁기만 하다

어떤 사람은

- 여기서 배상(reparation)이라 함은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금전적 배상(compensation)뿐만 아니라 진상공개, 사죄,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조치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쓴다.
- 그동안 5.18에 대한 명칭은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 변천 자체가 광주항쟁의 역사적 평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5.18무장폭도 난동으로 계엄사에 의해 규정된 광주항쟁은 그후 정부여당에 의해 사용된 ‘광주사태’, ‘광주사건’등의 관변측 표현이 있는가 하면 ‘광주민중항쟁’ ‘광주항쟁’ ‘광주의거’등의 재야측 표현으로 갈려졌다. 정부에서는 6공화국 ‘민화위’ 아래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공식용어로 쓰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광주문제’ ‘5.18’이라고 한다. ‘광주’라는 지역 명칭을 병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단순히 지역의 차원으로 축소시키고 지역감정을 촉발함으로써 그 진정한 민족적 의미를 왜곡시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5월항쟁’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이수인,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광주민중항쟁의 현주소, 한국기자협회 광주. 전남지부, 1992, p.23 참조) 호칭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고 이 글에서는 간단히 ‘광주항쟁’으로 통일하여 부른다.

너의 죽음을 개죽음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너의 죽음을 반국가 폭도죄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너의 죽음을 내란죄, 사회질서 파괴 소요죄라 부른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기나긴 싸움
광주는 결코 광주만이 아닌
민중, 민족, 인류 공동의 싸움,
인간의 양심을 대신하여
민족의 비극을 대신하여
반독재, 반유신, 반군부 집권
반민족적 불의를 무찌르기 위하여
두번 세번 다시 죽는
죽어 다시 살아나는
너는, 죽음을 넘어 돌아오는
영원한 희망이다 사랑이다³⁾

살자' 처벌이라는 핵심이 빠져 있다. 이것이 빠진 해결책은 영원히 그 희생자와 광주시민과 나아가 국민의 정의감을 채워줄 수 없다. 1994년 5월에 이루어진 어떤 여론조사에서 광주시민은 해결되어야 현안 가운데 '5.18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음으로써 여전히 광주항쟁의 해결이 '현재진행형'을 확인시켜 주었다⁶⁾.

"이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현정부에 대해서는 더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해결방법이 나왔으면 나았지 지금보다 나빠지기야 하겠습니까. 현정부가 안하면 다음 정부가 해 주겠지요."⁷⁾

"광주시민들의 마음 속에 적어도 광주문제에 관한 한 현정부는 5.6공과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과 광주 문제의 해결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투지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나라의 대통령이 광주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실정이다⁸⁾. 결국 현정부의 광주항쟁의 배상정책이 실패하였다라는 단적인 증거이다. 다시 광주시민은 광주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다음 정권을 벌써부터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기다림은 천년 세월의 무게와 아픔으로 지속되고 있다⁹⁾.

법률적 정의와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본 광주청산의 정도도 본질적으로 미흡하다. 수백명의 죽음과 수천명의 부상자를 낳은 이 '희대의 학살극'에 어떤 사람이 책임자인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무도 처벌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어찌 일반 형사법의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리고 광주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광주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나긴 싸움'의 과정에 있다.

2. 광주항쟁의 배상과 청산의 시기적 분석

가. 5공화국 기간

'학살자가 옥좌에 앉은' 기간 동안 그 학살의 희생자들이 어떤 항변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

사실을 반증하는 살아있는 증좌이다.

6. 1994년 5월 6일자 전남일보 기사.

7. 광주 망월동 묘역 안내소 관리인 홍순백의 증언(정경훈, "진상규명없는 5월 맞아 한숨", 뉴스메이커 1994. 5. 12자 기사 중에서 인용)

8.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3월 17일 망월동 묘역을 방문하려 했으나 일부 광주지역 학생과 주민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9. 1942년 유태인 출신의 시인 Layser Aychenrand는 아유슈비츠로 가는 추방열차에서 탈출하여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스위스 국경지대 Annemasse에 닿았다. 출입국관리요원이 그를 신문하면서 나이를 물었다. 그는 대답하였다. 2천세(two thousand years old)라고. (Simon Wiesenthal, Every Day Remembrance Day: A Chronicle of Jewish Martyrdom, Henry Holt and Company, New York, 1986에서)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피해자가 느끼는 세월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아직은 이르다. 광주문제가 종결되었고 광주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보고를 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른 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광주학살의 책임자가 대통령이었던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는 다시 배신감으로, 희망은 허탈감으로 바뀌었다. 김영삼대통령의 '5.13특별담화'는 광주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 담화가 5.18의 역사적 복권을 이루고 6공하에서 이루어진 편법적 보상과 복직에서 배제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복직을 다짐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로써 "현정권과 대다수 국민들에게 5.18은 이제 기념사업, 그것도 기념탑과 같은 유형의 기념사업만이 남은 과거사일 따름"이라는 견해도 있지 않았다⁴⁾.

그러나 광주는 끝났는가⁵⁾. 유감스럽게도 현정부가 제시,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에는 진상규명과 '학

3. 문병란의 '송가 -- 광주에 바치는 노래' 가운데서.

4. 손호철, "세계 민주성지를 통해 본 5.18기념사업의 추진방향", 진실은 발자국에 고여 있다: 오월 성역화 문제와 관련한 광주시민활동 보고서,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모임, 1994, p. 9

5.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이미 1982년부터 쓰이기 시작하여(1982. 5. 18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의 "광주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성명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5월항쟁의 계속은 그만큼 5월항쟁이 이루고자 하였던 목표들이 여전히 달성되지 못한

웠다. 그러나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광주의 진실도 언제까지나 묻어둘 수는 없었다. 부산미문화원사건을 통해 광주와 반미의 문제가 사회 전면에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1986년 5월 23일, 서울시내 각대학의 대학생들 73명이 서울의 한복판에 있던 미국문화원을 점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구호와 요구들은 모두가 광주항쟁에 진상규명과 미국의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땅속에 묻혀 있던 광주의 핫이슈가 보다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바로 그날 이문제는 마침 개회 중이던 국회로 옮겨 붙었다. 1986년 2.12 총선을 통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명야당의 재건에 성공한 신민당은 광주문제에 대한 공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다¹⁰⁾. 그해 5월 30일에는 '광주사태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의안'을 발의함으로써 신민당의 진상규명요구는 정점을 이룬다. 그 당시 이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80년 5월 18일 발생한 광주사태는 국가적 비극이요, 민족사의 일대오점이었다. 제5공화국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언필칭 국민화합을 운위하는 이 정부가 그간 끊임없는内外의 진상규명요청을 억압, 외면하고 호도와 은닉으로 일관함으로써 이 유례없는 민족의 아픔은 소화되지 못한 채 이를 위요한 유언과 비어의 창궐속에 국민내부의 심각한 대립과 불화, 불만과 갈등을 만연케 함으로써 이 오점과 멍에를 안고 수립된 현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의 연원을 이루고 - - - 이 의혹과 갈등을 명쾌하게 조사규명하여 - - - 참된 민주화를 통한 민족생생의 새 시대를 여는 신기원을 이룩하는 것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에게 부과된 책무이다"

학생을 비롯한 재야민주세력과 제도권 제1야당이 된 신민당의 진상규명의 요구가 드세어지자 이를 잠재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1985년 6월 7일 당시 국방장관 윤성민은 국회 국방위에서 '광주사태 보고'를 발표하였다¹¹⁾. 그 보고의 결론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1백 64명 이외에 더 있다면 언제든지 정부나 국회 각정당·각언론기관·종교단체·사회 및 인권단체등 어디라도 신고를 요망" 한다며 끝을 맺었다. 그만큼 5공정부 스스로 광주항쟁의 피해자가 2천여명이 된다는 '정설'화된 소문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광주문제는 5공의 '원죄'였던 것이다.

나. 6공화국 기간

(1) '민화위'의 활동

광주항쟁의 책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지목받던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후보는 "우리 민족사의 큰 상처

10. 이 당시 국회에서의 공방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광주사태' 공방", 신동아 1985년 7월호(전남사회문제연구소,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1988, p.314이하에 재수록)를 참조할 것.

11. 이 발표의 전문은 전남사회문제연구소, 위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p.290이하에 수록.

인 광주사태를 반드시 나의 손으로 최선을 다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치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그 경위야 어떻든, 그리고 내가 그때 어느 위치에 있었든, 광주사태 앞에 나는 빛을 진 사람의 입장"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민주화와 개혁으로 이 빛을 반드시 갚아 그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¹²⁾. '구렁이 담넘어가는' 듯한 애매한 공약으로 양김의 분열속에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민족화합추진위원회'(이하 민화위라 한다)는 당시 민자당의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선거 운동중에 공약했고 대통령 당선 뒤에 구성한 기구로서 제6공화국이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발전과 국민화합 및 사회개혁에 관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발족하였다¹³⁾. 그러나 민화위의 공약경위나 활동과정, 보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광주문제의 처리가 이 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민화위는 자체의 조사와 증언등을 통하여 토론하고 논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건의서를 마련하였다. 광주항쟁은 주로 '국민화합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¹⁴⁾. 이 가운데 '광주사태'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치유방안 마련과 관련된 문제]

진상조사문제: 광주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위원들은 * 실제조사에 착수할 때 상반된 진술이 나올 수 있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개재될 수 있으며 * 광활한 지역에서 수다한 사람이 관련되었을 뿐만아니라 8년이 지난 현실에서 그당시의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며 *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조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은 자연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지적했다.

책임자처벌문제: 광주사태를 해결함에 있어 일부 위원은 그 전제로서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12. 노태우,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 을유문화사, 1987, p.33

13. 민화위를 구성한 56명의 위원은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하였으며 대통령령 제12378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경비는 전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출되었다. (민족화합추진위원회,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한 건의, pp.5-6)

14. 광주문제를 또한번 왜곡하고 모독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만들어낸 이 '국민화합분과위원회'의 면면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으로는 박병권(전 국방장관), 간사위원으로는 장덕진(전 농수산장관), 위원으로는 고정훈(천도교 교령), 김문희(걸스카웃연맹 총재), 김옥균(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 김재순(월간 쎈터사 이사장), 김태청(전 대한변협회장), 남재희(국회의원), 박옥재(5.18부상자회 회장), 박찬봉(5.18우족회 회장), 서영훈(전 흥사단 이사장), 서의현(조계종 총무원장), 서정주(예술원 원로회원), 심종섭(학술원 회장), 이강훈(독립운동가), 이병용(전 대한변협회장), 이충환(전 신민당 최고위원), 조향록(전 한국신학대학장), 최종현(선경그룹회장) 등이었다.

위하여 과잉진압의 책임자를 색출·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벌문제를 논하기로 한다면,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교도소 습격 및 총기탈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처벌문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화합보다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치유방안]

광주사태의 성격 재규정: 지금까지 광주사태는 폭동이나 폭거등으로 규정되어 왔다.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이같은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광주사태가 그 발생초기엔 전국적으로 일고 있었던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광주사태를 '광주학생·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사과: 광주사태가 많은 사상자를 냈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은 발생초기에 시위 군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과잉진압이 그 원인 중의 하나였으며 사태이후 사상자 및 그 유가족등을 보살핌에 있어 소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사과의 뜻이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구체적 치유방안'으로 위령탑건립과 망월동묘지 공원화, 사상자의 재신고 접수, 보상, 유가족 및 부상자의 취업알선, 광주어린이공원 관리권 이전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건의문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민화위의 역할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장하여 노태우 정권의 짐을 덜어주고자 한 것 뿐이었다. 회생자의 상처를 덧내고 광주시민의 불만의 골을 더 깊게 하는 조치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광주항쟁의 진압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가 조직한 기구의 역할에 걸맞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민화위에 대한 당시 피해자들의 감정이 어떠하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절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광주는 민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명백히 하고 6.29 및 대통령선거처럼 또다시 기만술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광주진상조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피해자와 인권단체, 5.18관련단체등 각계각층으로 망라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실시되어야 한다."¹⁵⁾

(2) '광주특위'와 '광주청문회'

노태우대통령은 당선에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곧이어 실시한 총선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지고 말

15. 민화위에서의 이광영의 진술 (정명섭, 박호재, 위의 책, p.155)

았다. 특히 평화민주당은 호남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제1야당이 되었다. 국회가 야당이 장악 함으로써 집권여당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내에서 야당의 의사를 수용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광주청문회'가 가능하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1988년 6월 21일 민정당에서는 '광주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 평민당·민주당·공화당에서는 합동으로 '광주민주화투쟁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결의안' 이 각각 발의되어 상호 조정끝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키로 하는데 여야가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국회는 1988년 6월 27일 제142회 제9차본회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2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¹⁶⁾.

이 위원회는 1988.7.8 제1차 위원회를 연 이후 1989.12.30 제32차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32회의 전체회의를 열었고 47회의 간사회의를 열었다. 문서검증반 외에도 한미관계소위원회, 자료검증소위원회, 현장검증소위원회, 특별법제정 및 사후대책소위원회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¹⁷⁾. 본회의에서는 19회의 청문회를 열어 70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13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규하·전두환 증인은 2회, 장세동·장수복증인은 1회 각각 동행명령장을 발부, 집행하였으나 동행을 거부하였다. 끝내 출석을 거부한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출석과 국회모욕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출국금지요청을 냈다. 정부측에 총 362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165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였으며 문서감정반에서는 국방부·육군본부 및 총무처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문서검증을 실시하였다.

13대 국회는 '여소야대'라는 호조건 속에서 광주문제의 진상에 접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였다. 그러나 광주청문회는 첫 출발부터 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¹⁸⁾. 첫째, 광주특위는 국정조사권을 지니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증인에 대한 강제 구인권, 각종 문서등에 대한 압수·수색권등을 활용할 수가 없었다. 이 제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광주특위는 '종이 위의 호랑이' 또는 '이빨빠진 호랑이'가 되고 말았다. 둘째,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민주공화당은 일개파벌에 지나지 않았으며 통일민주당은 민정당과 밀실거래를 하고 있어 조사활동의 일정과 방법, 증인소환등에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웠다. 세째, 학살의 주역들이 5공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각종 자료들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파괴, 인멸시켜 버렸다.

그 외에도 이 광주특위가 조직되고 광주청문회가 열릴 당시만 해도 광주학살의 주범들이 여전히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자유롭고 객관적인 증언을 꺼려했다. 광주특위만으로는 광주학살의 주범들이 펼쳐놓은 위증과 궤변의 허울을 훼뚫고 진실에 접근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¹⁹⁾. 야당의 균열과 3당

16. 이때 위원수의 소속정당별로 보면 민주정의당 12인, 평화민주당 7인, 통일민주당 5인, 신민주공화당 3인, 무소속 1인이었다. '여소야대'의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출발한 이 특위가 3당합당에 따라 '여대야소'로 복원되어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해 졌던 것이다.

17. 자세한 활동내용에 관해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보고서, 1990. 2 참조.

18. 이 한계는 이해찬, "13대 국회에서의 광주문제 미해결 과제", 광주민중항쟁의 현주소, 한국기자협회 광주·전남지부, p.12 참조.

합당으로 그나마 표류하던 광주특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식적인 증언을 끝으로²⁰⁾ 마침내 해체되는 운명을 맞고 말았다^{21).}

(3) 6공화국 정권의 광주치유책의 한계

"망월동묘지로 들어가는 길이 1988년 2월에 포장되었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길, 먼지만 풀풀 날리는 길을 갑자기 포장해서 웬 일인가 했더니 노태우가 망월동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4월달에 노태우가 광주에 왔습니다. 사전에 경호원들이 묘지에 대기해 있는 것을 유족회, 부상자회등의 회원들이 불잡아 무전기까지 빼앗았습니다. 살인마가 묘지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²²⁾

대통령이 된 노태우의 망월동 참배 시도 그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였다. 그러나 광주시민은 그 참배를 거부하였고 실제 참배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노태우정권은 여전히 성난 광주를 달래지 못하였다. 광주시민은 "노태우가 망월동을 참배함으로써 광주항쟁의 의미를 회복시키려 한다", "망월동 참배는 전두환이 학살자이고 노태우 자신은 화해를 도모하는 사람으로 선전하려는 고도의 술책"으로 단정하였다^{23).}

기본적으로 6공화국은 5공화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이었다. 6공화국의 빨리를 캐면 바로 5공화국에 맞닿아 있다. 6공화국의 노대통령 역시 5공화국 정권을 창출한 이른바 신군부의 핵심 인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5공을 어미로 둔 6공이 자신의 존립근거를 망치는 어미의 비행을 스스로 밝힐 리가 없었던 것"이다^{24).}

다. 김영삼정부하의 광주항쟁

19. 이해찬, 위의 글, p. 7

20.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5공청산과 광주항쟁문제등에 관하여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한 전임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지난날의 문제를 밝히고 잘못된 일에 사과한 이제 이 문제에 분명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지난 2년간 나라와 국민의 힘을 소모시키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온 과거문제의 시비는 이제 끝났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주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한 지난날의 문제는 이제 역사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 1. 1 동아일보 기사)

21. 광주특위의 활동내용은 김영진, 충정작전과 광주항쟁 상. 하, 동광출판사, 1989 에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22. "살아 있음 -- 그 부끄러운 알리바이", 박호재, 정명섭, 위의 책, p. 270

23. 박호재, 정명섭, 위의 책, p. 270

24. 문순태, "부활의 도시에 떠는 숨죽인 비명", 세계와 나, 세계일보사, 1990년 5월호, p. 166

(1) '5.13 담화문'과 광주항쟁

김영삼정권의 출범은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광주문제의 해결에도 서광이 비치리라는 기대를 한껏 자아냈다. 3당합당으로 사실상 잠복되고 말았던 광주문제가 새로운 '문민정부'를 맞으면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과거 광주학살의 책임자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5.6공과는 다른 차별성과 여전히 '경상도 정권'으로서의 김영삼 정권이 어떠한 형태로든 광주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한편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광주의 5월관련 단체와 민주인사들이 이에 대비한 공동대응과 입장정리를 한 바 있다. 이때 관련단체가 합의한 15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25).}

1.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광주문제에 관해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촉구한다.
2. 현 광주보상법을 폐기(무효화)하고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3. 가해자 고소, 고발등의 법률적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
4. 범시민기념사업회를 공익법인으로 추진하여 기념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5. 재심청구를 통한 5.18 당시의 군사법정 판결의 파기를 요구한다.
6. '5항동'이 추진중인 광주보상법 위헌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7. 5월 18일을 5.18 항쟁기념일로 제정토록 한다.
8. 망월동 묘역의 위치는 현재 위치를 확장, 성역화하도록 한다.
9. 집단배상 차원에서 상무대의 무상양여 요구를 계속한다.
10. 계속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을 위해 영구적으로 제도적인 치유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11. 5.18 피해자중 미신고자에 대한 재신고 및 재심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12. 5.18과 관련하여 미국에 망명중인 윤한봉 선생의 안전귀국을 보장해 주도록 요구한다.
13. 망월도 5.18묘역내의 민주열사 묘역도 5월 영령들과 함께 계속 존치토록 한다.
14. 5.18 당시 전남대 학생과장이었던 서명원 선생과 전북 완산여상 교사였던 이상호 선생의 원직으로의 즉각 복직을 강력히 요구한다.
15.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하여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에 대표단을 파견토록 한다.

취임초기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광주항쟁의 관련단체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3년 3월 17일 김대통령의 망월동묘역 참배가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불발되면서 대통령 면담조차 취소되고 말았다. 그대신 김대통령의 광주문제에 관한 자신의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5.13특별담화'가 발표되었다.

김대통령이 이른바 '5.13 담화문'은 새로운 정부의 '광주해법'을 담은 것이다. 이 특별담화에서 김대통

25. 5. 18위령탑건립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련단체의 15개 합의사항, 1993. 2. 14자.

령은 광주항쟁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동원한”²⁶⁾ 지극한 평가와 그 희생자에 대한 추도, 광주시민에 대한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민 민주화를 향해 우리가 걸어온 고난에 찬 역정에서 볼 때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뚝한 한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다거나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언급은 광주항쟁을 평가한 일부 내용이다. 그 평가 위에서 김대통령은 광주시의 기념일 제정, 망월동 묘역의 성역화, 기념공원과 기념탑 건립, 행방불명자와 부상자에 대한 추가신고 기회의 부여, 부상자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 지명수배 해제와 해직자에 대한 복직 및 전과기록 말소, 아직도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력과 지원등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담화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거부한 것은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의 국민적 요구였다. 김대통령은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의 목적이) 결코 암울했던 시절의 치욕을 다시 들추어 내어 갈등을 재연하거나 누구를 벌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하였다²⁷⁾. 또한 가해자 처벌 문제에 관하여는 “이제 미움과 갈등의 고리를 바로 우리 모두의 손으로 끊어야”하며 “오늘에 다시 보복적인 한풀이가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다같이 잊지는 말되 과감하게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화해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상규명은 그다음 모든 형태의 배상의 서막이며 전제이다. 진상규명 없이는 아무런 사죄와 명예회복, 금전적 배상과 기념사업이 의미를 잃는다. 도대체 누구에 의해 무슨 일이 그 당시 이루어졌는지 안개 속에 있는데 무슨 사죄가 있으며 누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고 배상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가해자 처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직 여전히 누가 학살의 주범이며 학살의 과정이 어떤 모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그 진실은 어둠 속에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용서란 있을 수가 없다²⁸⁾. 광주항쟁의 해결을 위한 이 두가지 핵심사항을 빠뜨림으로써 김정권의 한계는 자명해 졌으며 그 완전한 해결은 다시 다음의 정권으로 이양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광주시민들은 당초 진상규명의 유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범국민적인 진상조사활동과 특별검사제도입을 주장하면서도 김대통령이 제안한 기념사업추진안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장의 자문기관인 ‘5.18기념사업추진협의회’(오추협)에 이름있는 재야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정부와 협조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 그 예증이다. 그러나 1994년 4월 7일 열린 오추협 회의에서 윤영규, 지선, 김정길, 장용주위원 등이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월기념사업은 후대에 5.18을 왜곡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밝히면서 탈퇴하고 말았다²⁹⁾. 이것은 진상규명없는 기념사업이 얼마나 본질을 외면한 겉치레 사업이 되고 마는지를 보여주었다.

26. 1993년 11월 11일자 무등일보 기사.

27. 김영삼정부는 여러사건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면서도 현실적 또는 법률적 조치보다는 역사에 맡기자는 쪽이었다. 5.16, 10월유신, 12.12사태등에 대해서도 종래와는 다른 평가를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사학자들의 뜻”으로 들렸다.(1993년 7월 24일자 한국일보 기사)

28. ‘보복적 한풀이’가 되지 말고 ‘화해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상의 규명을 한 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29. 1994년 5월 12일자 내일 신문 기사.

(2) “토목공사일 뿐인 5.18 기념사업”

더구나 그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약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광주항쟁의 해결을 위한 이른바 ‘9가지 치유책’이 국민적 과제로서가 아니라 광주의 ‘지역적’ 문제로 국한되고 격하되었다는 사실이다³⁰⁾. 광주항쟁의 기념일 자체가 국가적 기념일이 아니라 단순히 광주시의 조례에 의한 기념일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 그 좋은 사례이다. 광주항쟁은 결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민주화와 국민 모두의 관심사³¹⁾였기 때문에 나라의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³²⁾. “5.18을 광주만의 문제로 국한시켜 보려는 복선이 깔렸았음”을 간파한 광주지역의 운동단체들의 반대로 ‘5.18기념일 제정을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보되었던 것이다³³⁾.

다음으로 김영삼정부는 광주문제를 신속히 매듭짓고자 하는 조급증을 드러냈다. 광주항쟁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명예회복을 기도했다가 보다는 ‘부산·경남’의 지역적 근거를 가지고 탄생한 김영삼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취지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광주항쟁의 ‘마지막 수배자’, 이른바 ‘윤한봉 문제’에 대한 당국의 시각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당국은 윤씨의 망명후 재미활동과 행적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조차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정치적 제스처였다는 것이다. 안기부 전 제1차장이었던 정형근과 월간조선 조갑제 부장 사이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윤한봉문제)는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광주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면서 여러가지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윤한봉씨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넘어간 사건인데 언젠가는 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말하였다.³⁴⁾

30. 지배세력이 그동안 5월항쟁을 계기로 지역감정문제를 지배이데올로기로 격상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던 사실 (이수인, 위의 글, p. 23)을 상기한다면 기념일을 광주시의회의 조례에 맡기는 것은 이러한 지역감정이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김영삼정권의 통치술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1.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과 감금등이 결코 유대인만의 문제로서 이스라엘에서만이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수많은 박물관과 기념관이 설립되어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고통으로서 다함께 기억하고 재발을 방지해야겠다는 신념에서이다. 또한 그 학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동시대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전 인류의 경험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David Rosenberg, *Testimony: Contemporary Writers Make the Holocaust Personal*, Random House, New York, 1989). 그러한데 하물며 광주학살이 광주만의 문제라는 것은 지나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32. 광주항쟁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해외에서도 거세게 일었다. 1993년 5월 13일자 워싱톤 호남향우회보 참조.

33. 이들의 시각은 “항쟁의 발원지가 광주였을 뿐 당시 한국사회의 누적된 모순구조가 전국민의 한결같은 민주화 열망을 안고 폭발했다는 점에서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과 일맥상통한 --- 국가기념일화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진” 광주항쟁을 광주시만의 기념일로 한다는 것은 그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993년 11월 13일자 무등일보 기사)

34. “조갑제의 심층인터뷰: ‘음지의 전사’ 정형근의 폭탄 증언 15시간”, 월간조선 1995년 5월호, pp. 122-123

김영삼정부의 광주문제 해결 방안도 “진상규명과 5.18정신정립이 채 안된 상태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절름발이식 광주치유책’이었던 것이다³⁵⁾. 그 어떤 ‘5.18’의 해결책도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5.18정신’에 대한 이해와 계승의 결의없는 물리적인 기념사업은 단순히 ‘토목공사’에 불과한 것이다³⁶⁾. 또는 광주항쟁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단순히 기념공원을 만드는 일은 그냥 ‘스포츠 센터’를 만드는 일에 다름 아니게 된다. 말의 성찬과 ‘행정력과 돈을 동원한 해결책’³⁷⁾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광주를 두번 죽이고 모독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주의 5월은 여전히 긴장 속에 남아 있다. 5월이 되면 학생들의 시위와 소란은 계속되고 시민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3. 배상과 청산의 범주별 평가

가. 개관

“5.18 부상자로서 현재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시 폭도, 불순분자라는 낙인을 떼는 명예회복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당시 정권에 눈이 어두워 무고한 시민을 대량 학살한 원흉들을 잡아서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문제, 그리고 부상자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무조건 치료를 무상으로 받게 하고 보상의 정도에 따라 생계보장이나 연금혜택, 자녀들의 교육비 보조등 적극적인 치유책을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³⁸⁾

광주항쟁에서 단지 부상을 입은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이다. 항쟁의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유족들은 더욱 큰 요구를 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 요구의 내용만으로도 훌륭한 배상목록이 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자 배상의 네가지 항목은 광주항쟁의 희생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배상의 형태이다. 그동안 광주시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사상자등에 대한 피해 배상, 항쟁관련자등에 대한 재심등을 포함한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등이다³⁹⁾.

이러한 요구는 국제사회에서 정립되고 있는 배상의 범주와 기준에도 대체로 들어있는 항목이다⁴⁰⁾. ‘중

35. 1993년 11월 11일자 무등일보 기사.

36. 윤장현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공동의장은 “광주시는 망월동 성역화사업을 5.18정신계승사업이 아니라 단순한 토목공사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경훈, 위의 글, p. 27)

37. 시사저널, 1993년 5월 6일자, p. 13.

38. “불임의 세월”, 오월의 아픔을 통일의 환희로, 박호재. 정명섭, 동광출판사, 1989, p. 268

39. 유남영, “광주항쟁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신동아 1993년 5월호, p. 549

40. 자세한 것은 졸고,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정부 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4. 2. 21자 세미나 자료집, p. 3 참조.

대한 인권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배상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범주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논의이다⁴¹⁾.

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교육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1)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 (2)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 (3) 책임자의 처벌
 - (4)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 (5)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 (6)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돋는 요원의 훈련
 - (7) 다음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 ①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 특히 민간통제하에 두는 일
 -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수준을 보면 광주항쟁의 관계단체들이 요구하는 항목이 결코 지나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국제인권법의 기준이 훨씬 다양하고 근본적인 것을 알겠다. 더구나 이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obligation)이다. 그것은 또한 희생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의 어떤 실종자 가족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위원회는 자신의 딸의 실종과 또한 그 딸의 운명과 소재지 불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한다. 청구인은 그녀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 자신이 국제인권규약 제7조 위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⁴²⁾

41. Second Progress Report Submitted by M. Theo van Boven, Special Rapporteur,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9 July 1992, E/CN. 4/Sub. 2, pp. 22-23.

이 가운데 우선 순위가 특별히 있을 수는 없다. 모두가 절실하며 긴요하다. 희생자의 유족들과 부상자들이 절박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개인적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보상이 시급하였다. 그러나 그 보다 더욱 시급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진상규명이며 그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 폭도로 몰린 광주 시민의 명예회복이었다⁴³⁾. 특히 진상규명은 사죄와 명예회복, 금전적 배상과 가해자 처벌의 첫걸음이자 첫관문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상규명없이 다른 어떠한 실질적 배상조치도 이루어질 수 없다. 광주시민 역시 현재의 상황에서도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⁴⁴⁾ “화해나 화합은 가해자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 때 가능한 것”이라는 말로 함축되는 것이 광주시민의 정서이다. 진상규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용서든 화해든 가능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⁴⁵⁾.

정부측에서는 그동안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는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과 소극적 조치로 일관했지만 보상을 위한 법적 조치에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신속하였다. 보상조치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비하여 진상규명과 가해자처벌 문제는 답보상태다⁴⁶⁾. 이러한 정부의 대조적인 태도는 곧 ‘돈’으로 광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진상규명과 가해자처벌은 광주항쟁을 짓밟고 정권을 장악하였던 5·6공 세력과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요구이다. ‘3당합당’을 통하여 5·6공 세력을 모태로 하여 탄생한 현정권이 그러한 전면전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김영삼대통령의 ‘5·13특별담화’가 바로 그러한 현정권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 진상 규명

(1) 계엄당국과 5공정권이 밝힌 진실

광주를 진압하고 정권을 쟁취한 신군부가 이른바 ‘광주소요사태’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⁴⁷⁾. 시민과 학생은 온통 폭도로 몰리고 있었고 그 폭도를 진압한 군대는 정당하였다는 내용으

42. 유엔 인권위원회 결정 No. 107/1981. Final Report Submitted by Mr. Tho van Boven,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July 1993, p. 27

43. 민화위에서의 이광영의 진술 중에서 (정명섭, 박호재, 위의 책, p. 155)

44. 전남일보사가 광주시의회등이 1994년 5월 광주사회조사연구소등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5·18의 현안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요소로는 진상규명이라고 응답대상자 시민 699명과 교수·언론인·의회의원 등 모두 699명 중 시민 53%, 여론주도층 63%이 대답했다. (1994년 5월 4일자 전남일보 기사)

45. 뉴스메이커, 1993년 5월호, p. 77

46. 이재의, “지휘관 35명 고소 공소시효가 관건”, 예향, 1995년 5월호, 광주일보사, p. 54

47. 원래 1980년 6월 계엄사령부가 밝힌 진상이 있으나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1988, p. 173 이하에 전재) 너무 길어 이를 요약하여 설명하

로 가득차 있다.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날인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소요사태는 그 규모와 양상에 있어서 정부수립 이후 가장 격렬했던 최대규모의 지역소요사태였으며 이 사태는 국보위를 설치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 200여명의 가두시위로 시작된 광주사태는 불순용공분자들과 일부 정치인 추종세력, 그리고 서울에서 광주로 피신, 집결했던 극렬 문제학생들이 유포한 악성 유언비어에 자극된 일부 시민의 가세로 삽시간에 확대되었다. 5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10여만명의 시민, 학생이 시위에 참가하여 진압경찰 및 계엄군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태는 더욱 악화하여 폭도화한 일부 시민들이 방송국등 공공건물을 기습 방화하고 전남도청등 관공서를 파괴 점거하는 한편, 일부 과격파 폭도들은 경찰서와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하고 탈취한 차량으로 전남도내를 돌면서 민중봉기를 선동하였다. - - - 치안부재의 무법천지가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계엄군은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선량한 대다수 시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5월 27일 새벽에 광주시내로 진입, 저항폭도를 생포하는등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사태를 진압하였다. 광주사태로 민간인 148명, 군인 22명, 경찰 4명이 사망하고 380명이 부상하였으며 260억 상당의 막대한 공공재산이 손실되었다.”

광주진압 직후 계엄당국은 “진실은 분명 하나뿐이며 날조된 허위는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이다. 계엄당국으로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명백히 밝혀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과 조치를 취할 것을 군의 존엄성과 명예를 걸고 친명한다”⁴⁸⁾고 발표하였다. 누가 무어랬길래 당시의 계엄사는 “진실은 분명 하나뿐”이라고 외쳤을까. 계엄사가 진실만을 조사하고 발표하였다면 구태여 왜 “날조된 허위가 언젠가는 밝혀지리라”고 비장하게 발표하였을까.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었음을 그후에 드러난 진실과 역사가 증명한다.

기실 그당시에도 이미 계엄사의 발표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문은 소문의 꼬리를 물고 전국을 돌았다. 소문만이 아니었다. ‘재경 전남도민 일동’(1980년 5월 29일자), ‘현직기자 박, 김, 신’, ‘전국민주청년학생의 소리’등의 명의로 광주의 진실을 유인물에 담아 유포되고 있었다⁴⁹⁾. 그당시 계엄사 스스로 ‘유언비어’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었다. “광주시 현지를 비롯한 각지에 아직도 유포되고 있는 악성 유언비어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광주사태 진상을 왜곡되게 인식시켜 그 어느때 보다도 요청되는 국민적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다분한 바 현지의 민심수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긴

고 있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백서, 1980, pp. 13-14 을 인용하였다.

48. 1990년 6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 당시 계엄사령부 발표문.

49. 이러한 유인물들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 (I), 1987, p. 305 이하에 실려 있다.

요한 과제는 근거없는 악의적 유언비어의 근절과 이의 전파, 유포의 방지이다”라고 계엄당국은 말하고 있었다.⁵⁰⁾

(2) 진실의 억압

그러나 유언비어는 끝없이 확대재생산되어 광주는 점점 민주화운동의 핵심이슈로 자리잡아 갔다. 도대체 광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광주에서 희생된 사람의 숫자는 몇명이나 되는가등 모두가 수수께끼와 같은 일로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심어 주었다. 이 문제에 관한 언급만으로도 감옥을 갈 수 있는 시절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광주의 진실을 가장 먼저 밝혔던 것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사제단이었다. 1980년 6월에 이 사제단 명의로 ‘광주 사태에 대한 진상’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여기에는 공수특전단의 만행, 대모대의 무장경위등에 관하여 자세히 실려 있어 성직자들이 본 광주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폭도는 누구인가’라는 소제목 아래 “사태가 수습되었다는 당시의 발표를 듣고 ‘폭도’ ‘난동자’ ‘극렬분자’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믿는 광주시를 찾아온 외래객들은 너무도 평온한 시내 분위기에 의아심을 갖는다. - - - 군은 이상과 같은 한국근대사상 유례없는 유혈사태를 유발하여 놓고 그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일체의 보도를 통제하고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 전체의 가슴에 피맺힌 한을 남겨 놓았다”고 쓰고 있다⁵¹⁾.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주항쟁 직후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김성용 신부의 ‘분노보다는 슬픔’이라는 문건이었다⁵²⁾.

때로는 칠혹같은 어둠과 깊은 바다같은 침묵을 깨뜨리고 온 몸을 불살라 진실을 말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우리를 짓눌러 우리의 숨통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우리를 번득이는 총칼의 위협아래 끌려다니는 노예로 만들고 있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참한 살륙으로 수많은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피를 뜨거운 오월의 하늘 아래 뿌리게 한 남도의 봉기가 유신잔당들의 악랄한 언론탄압으로 왜곡과 거짓과 악의에 찬 허위선전으로 분칠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50. 위 계엄사의 1980년 6월 5일자 발표문.

5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의 책, pp. 295-297

52. 그가 쓴 문건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난다. “공포와 긴장이 가시고 세월은 무심히 흘러가고 있다.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가슴속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가슴을 짓누른다. - - - 80만 광주시민의 피가 스며든 한과 쌓이는 슬픔은 어느날 씻겨질 것인가. 끊임줄 모르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이 답답하고 무거운 가슴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아 - - - 분노보다도 슬픔이 - -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의 책, p. 103)

1980년 5월 30일 서강대 무역학과에 재학중이던 김의기가 투신하면서 남긴 ‘동포에게 드리는 글’의 일부이다⁵³⁾. 그 뿐만이 아니었다. 같은해 6월 9일 신촌로타리에서 노동자 출신의 방위병 김종태가 광주학살을 규탄하며 분신하였다. “국민여러분 과연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로 시작되는, 분신 직전에 행인들에게 뿌렸다는 유인물 ‘광주시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에서 “도대체 우리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 군인한테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며 죽어가는데 나만 우리 식구만 무사하면 된다는 생각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라고 준엄하게 묻고 있다⁵⁴⁾. 1981년 봄, 5월항쟁이 어스러진 한해 후 서울대학교 도서관 6층에서 “전두환 물러가라”며 세번 외치고 자신의 몸을 던졌다. 김태훈이었다⁵⁵⁾. 다시 1985년 건축노동자 홍기일로부터, 강상철, 송광영등을 거쳐 이재호 198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표정두씨등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분신이 이어졌다⁵⁶⁾.

(3) 진실을 캐는 사람들

진상에 관한 갈증을 채워준 것은 국내의 유인물이나 문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흘러들어오는 영상자료나 유인물들의 공헌도 있었다. 이것은 광주항쟁 당시 국내 특파원들의 취재물들이 역수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황석영이 정리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한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이 작업을 통하여 2백여명의 시민들의 증언에 의한 당시 상황의 재현, 사건의 원동력으로서의 일반 시민의 역할 조명등이 이루어졌다. 그는 이 자료집을 정리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⁵⁷⁾.

“우리는 항쟁이 끝나고 나서 여섯달 지난 뒤부터 재난의 폐허속에서 눈물을 씻으며 살림도구를 찾아 쟁기는 심정으로 각종 자료와 체험담,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 - - 직업이 곧 글쓰는 자였던 필자는 감히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움에 시달려 왔다. ‘광주’를 말하지 않고는 다시 글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한번 금기가 무너지자 물밀같은 광주의 진실에 관한 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거의 1987년 이후의 것들이다. 광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회고담, 지도자들의 전기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글들 가운데 책으로 묶여져 나온 것만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3. 자세한 것은 김종찬, 불의 기록 피의기록 죽음의 기록: 민족민주의 제단에 바쳐진 민중의 아들딸, 실천문학사, 1988, p. 52 이하.

54. 김종찬, 위의 책, p. 206

55. 김태훈의 사망경위에 관해서는 김종찬, 위의 책, p. 72이하.

56. 자세한 것은 윤재걸,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1988, pp. 181-184.

57.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 머리말.

이 뒷받침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산만한 질문과 준비된 증인들의 답변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는 없었다.

-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의거 자료집, 1985
- * 고 박관현열사추모사업회 편.임낙평 지음, 광주의 넋 박관현, 사계절, 1987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I)(II), 1987
- *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학술부 및 각 단과학술부연합 편, 혁명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남풍, 1988
- * 윤재걸,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1988
- * 김양오, 광주보고서, 청음, 1988
- * 평화민주당, 1980년의 진실: 광주특위 증언록, 1988
- *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광주민중항쟁비망록: 망월동묘비명, 1989, 도서출판 남풍
- * 김영택, 5.18민중항쟁, 동아일보사, 1990
- *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박호재.임낙평 정리, 들불의 초상: 윤상원평전, 풀빛, 1991

대체로 5공화국이 무너진 1987년 이후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만큼 공식책자로 묶여져 나온다는 것이 어려운 시기였다. 더구나 보다 본격적인 자료와 증언의 수집이 이루어진 것은 한참 뒤였다. 자체 역량에 의해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광주항쟁의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가 발족되었다. 이들은 대학의 교수등 전문연구진을 비롯해 진보적인 젊은 학생들로 망라되어 있다. 이 연구소가 1990년 구술 자료를 모아 펴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은 가장 방대한 사료집이 되었다. 이 전집에는 광주항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과 수습등으로 깊이 관련된 사람 5백명의 구술채록이 담겨 있다⁵⁸⁾. 그러나 아직 이 자료집으로 광주의 진실과 아픔이 충분히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 허망한 기도

--국회의 '광주청문회'의 '화려한 쇼'

특별검사가 임명되거나 검찰이 개과천선하여 전면적으로 광주항쟁의 진상을 조사하기 전에는 그 진실을 밝히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지난 1988년의 '광주청문회'는 비록 증인신문에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기는 하였지만 최초의 본격적인 청문회로서 많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수사권과 전문성

58. 이 자료집의 의미를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이영희 이사장은 이렇게 정리한다. "이 사료전집에 수록된 증언 한마디 한마디는 글자가 아니라 선혈이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두려움에 떨면서 증언을 고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한 줄의 목격담, 체험담을 얻어내기란 쉬운 일 아니다. 평생을 불우하게 살아야 할 군부독재권력의 희생자들의 증언은 그들 자신의 처절한 체험일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그 정확한 수조차 밝혀지지 않을지 모르는 무수한 원혼들의 피의 증언이다. 그러기에 이 사료전집을 읽는 우리들은 지금도 눈을 감지 못하고 천지간을 떠돌아다닐 그날의 영웅적인 투사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것이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간행사 중에서)

"핵심에서 벗어난 질의와 대답으로 점철되고 있는 청문회석상의 애매한 말장난으로는 항쟁의 진상은 폭로될 수 없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학살의 원인에서 시작하여 끄트머리까지 하나의 사건도 빼지 않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획득해 내야 한다"⁵⁹⁾

이 청문회가 밝혀내지 못한 과제는 밝혀낸 것보다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미해결과제를 듣다면 가장 먼저 '지휘체계 이원화의 실상과 발포명령자 규명'이다. 이것이야말로 광주항쟁의 진실의 최대 '키 이슈'이며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이다. 당시 공식지휘체계통인 육본-->2군-->전교사-->31사단-->7공수 33,35대대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그대신 신군부핵심-->특전사령부-->광주 현지공수부대로 이어지는 명령체계를 통해 발포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 과정과 당시의 신군부핵심의 행적등 밝혀져야 할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⁶⁰⁾.

그외에도 실종자들의 행방이 암매장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으로 남아있다.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것이 146명이며 그 가운데 39명은 보상대상으로 광주시에 의해서도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이 행방불명자는 어디로 갔는가⁶¹⁾. 가장 관심을 끌고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던 민간인사망자의 숫자 하나 정확히 밝히지 못한 채 세월은 흘러가고 있다.

(5) 진실은 아직도 먼 곳에

얼마전 5.18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막바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항쟁을 목격한 한 외국인 목사의 증언록이 처음으로 공개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당시 광주에서 침례교 목사로 일하던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일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일기에 따르면 당시 군 헬리콥터들이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항쟁기간 동안 사망한 시민은 모두 832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의 새로운 주장이 담겨 있었다⁶²⁾. 지난 88년 광주청문회에서 헬기의 기총소사 사실을 최초로 주장한 조비오신부는 그당시 헬기 조종사들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당했다⁶³⁾. 또한 정웅 당시 31사단장은 역시 위

59. 전계량, "광주땅은 하나의 역사가 되고", 박호재.정명섭, 위의 책, p.10

60. 이해찬, 위의 글, p. 7 및 위 민주당 5.18광주민중화운동진상조사 '진상규명소위원회' 활동계획안, p. 26

61. 이 쟁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남아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위 민주당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 '진상규명소위원회' 활동계획안, pp. 26-28 참조.

62. 이 일기의 요약분은 한겨레 21, 1995. 4. 21자, p. 9 이하에 수록되어 있다.

63. 한겨레 21, 위 기사, p. 14. 조비오 신부의 주장에 대해 군은 조직적 반박을 하고 나섰으며 그 주장을 방영한 문화방송의 최창봉 사장, 조비오 신부, 김윤영 프로듀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던 것이다.(위 기사, p. 15) 조비오 신부는 이에 대해 1989년 3월 13일 성명을 통해 "당시 명령에 의해 부득이 무력진압에 참여해야 했던 군 관계자들이

청문회에서 “80년 5월 22일 육본 작전참모부 차장인 이상훈 소장이 전화를 걸어 ‘시위대가 차량을 이용해 지방으로 분산되는데 왜 공격을 않느냐. 무장헬기가 전교사에 있으니 그것으로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전국방장관은 정씨를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보안사에서 감청을 하고 있었으므로 녹음테이프를 확인해 보라”고 맞섰던 것이다⁶⁴⁾. 이러한 상황에서 피터슨 목사의 증언은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안개 속에 묻혀져 있는 진실의 한가지 예에 불과하다.

위의 헬리콥터 기총소사 사실의 진위에 관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책임자였던 군은 조직적으로 은폐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 하나의 행위를 둘러싸고도 이같은 은폐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명령하고 지휘한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의 은폐는 어느 정도로 철저할지 상상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그 잔혹한 살상과 진압의 지휘계통을 밝혀내고 사건의 주모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른다. 더구나 그 피의 진압행위가 곧바로 정권탈취를 위해 신군부가 처음부터 광주를 선택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량학살을 획책했는지, 그리하여 내란행위를 자행했는지에 관하여 진실을 검찰이 명쾌히 밝혀 낼 수 있을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특히 이 수사에서 필수적인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자체도 이루어질지 모르는 마당이다⁶⁵⁾.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의 진실은 아직도 먼 곳에 남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계기를 마련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광주 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를 조직하여 기존의 보상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배상법을 마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광주특위를 재구성하기 위한 협상 방침을 정했으나 여기에 무게가 실려있지는 않다. 민자당 역시 광주문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13특별담화’ 이후 광주의 관련단체들은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독자적으로 준비하여 11만명의 서명까지 받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정부나 야당이 마련한 광주관련 특별법안이 대부분 ‘보상’에 한정된 데 비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보상이 아닌 배상 개념의 도입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⁶⁶⁾.

한편 당국은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13대 국회의 광주청문회 당시 광주특위가 정부에 대하여 36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179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 가운데 80년 당시 진압부대의 작전상황일지, 작전회의록, 작전명령철 등 핵심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⁶⁷⁾.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1993년 6월 민주당의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가 또다시 군관련문서 74건 등 광주

민족과 역사앞에 진실을 밝혀 양심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다. (5.18광주민중항쟁 유족회, 광주민중항쟁비망록: 망월동 묘비명, 1989, p.126)

64. 한겨레 21, 위 기사, p.15

65. 두 전직 대통령의 소환이 ‘광복후 최대의 정치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있고 처벌 자체는 둘째치고 소환·조사 자체가 ‘정치적 사형선고’로서 5·6공 청산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시사저널, 1993년 5월 6일자, p.18).

66. 이재의, 위의 글, p.52

67. 1993년 6월 9일자 한국일보 기사.

관련 자료제출을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거부되었다. 제출이 거부된 주요자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⁶⁸⁾.

제출요구자료	제출요구일시	제출거부내용
5.17전군주요지휘관회 의록 및 관련자료일체	1984. 4. 4.	회의록은 영구보존문서이나 ‘회의록 없음·회신과 함께 회의 일시, 참석자명단, 안건만 요약 제출’
1980.6국보위산하 광주 사태진상조사위의 기 록 일체	1984. 8. 4.	국방부의 총무처이관 접수에 따라 총무처에 자료제출요구하였으나 ‘없음’ 회신. 그러나 부산문서보관소의 문서검증시 소장 확인
작전계획철.작전일지철 상황일지철.작전회의록 철	1988. 8. 17 1988. 9. 10 1988. 11. 12	육군본부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문서보관관리규정에 의해 영구보관서임에도 ‘파기’ 등 회신
1979.10.27 연합사 재 편성에 관한 연합사 메시지등	1988. 11. 12.	국방부에서 ‘없다’는 회신
5.18기간중 군부대에서 가매장관계서류	1989. 2. 13.	국방부에서 ‘없다’는 회신
5.18직후 훈·포상자의 공적조서	1989. 11. 29.	반영구보존문서임에도 ‘폐기’ 회신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이 서류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나 다수당인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국정조사권 자체가 발동될 수 없다. 이 주요 서류들의 공개가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68. 민주당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진상규명소위원회’ 활동계획안, 제1차 전체회의, p.32

것이라는 점에 의문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것이 또 한 광주항쟁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다. 정당한 평가, 원상회복, 그리고 사죄

(1) 광주항쟁의 정당한 평가

-- '광주폭동사태'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중항쟁'으로

광주항쟁을 진압한 신군부세력은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설'에 근거하여 광주항쟁을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유발된 폭도들의 무장난동"으로 규정했다. 그들이 주장한 '광주폭동사태의 경위와 진상'은 '불순분자들(북한의 고정간첩과 김대중추종세력을 지칭)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조종과 교묘한 선동을 통하여 광주지역시민들의 지역감정을 폭발·흥분시킴으로써 겉잡을 수 없는 군중심리의 폭발을 유도하여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⁶⁹⁾.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군부세력이 그들의 반동적이며 반역사적인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그에 대한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모략선전에 불과하였다⁷⁰⁾. 그러나 점차 광주문제에 대한 국민의 진상요구가 거세어지고 관련자료가 널리 알려지면서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1987년의 6월항쟁 이후 진행된 전반적 민주화와 더불어 광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이후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전정권과의 이미지 단절을 위해 이른바 '광주민주화운동론'을 새로이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광주항쟁이 더 이상 "불순분자의 책동이나 유언비어에 의해 유발된 폭동"이 아니라 당시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추세 속에서 전개된 "광주학생·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정은 당시의 사태전개에 관하여 군부의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폭동설'보다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도 "광주시민도 정당하고 진압군도 정당하다"는 일종의 양시론(兩是論) 내지 쌍방책임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광주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노태우 자신의 면책과 은폐를 위해 불가피한 논리이기도 하였다.

1989년초의 광주청문회를 통해 보편화되기 시작한 광주항쟁에 관한 인식은 "5.17쿠데타 조치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공수부대의 상상을 초월한 야만적 살상행위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자위적 항쟁"이라는 것이었다. 군부강경파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광주항쟁의 원인을 군의 과잉진압에서 찾고 시민들의 순수한 투쟁을 강조하는 점에서 광주항쟁의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기존의 지배구조를 거부하는 최고의 저항형태인 무장

69. 계엄사발표문, "광주사태", 80년 전후 격동의 한국사회 2, 사계절, 1984, pp. 941-942.

70. "광주민중항쟁을 보는 관점들",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1990, p. 13

71. 1988년 2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 (민화위 국민화합분과 회의기록).

투쟁의 수준에까지 나아가게 된 역사적·구조적 원인을 근저에서 파악하지 않고 그러한 투쟁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촉매만을 핵심적 요인으로 포착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비판받는다.⁷²⁾

나아가 진보적 입장에서는 광주항쟁을 "우리 사회의 민족과 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억압하는 국내외적인 반민족·반민주·반민중적 세력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틀을 세워 주었으며, 그러한 적대적 세력에 대한 투쟁과 변혁주체로서의 민중이 역사적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⁷³⁾. 이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된 민중운동진영에서 광주항쟁을 민중운동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거나 이른바 '민중권력'을 창출하려는 현재적 입장에서 광주항쟁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광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와같이 시대적 변화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 왔다⁷⁴⁾. 그러나 그 어느 견해를 취하든간에 오늘날 광주항쟁 직후의 신군부세력이 내세웠던 '폭동론'의 사실과 근거는 모두 허구였음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마당에서 악의적 조작과 왜곡에 근거하여 명예를 손상당하고 처벌된 사람들에게 가해자와 국가는 사죄하여야 하며 그 핍박과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2) 형사처벌된 사람들의 원상회복

① 광주항쟁의 '전과자들'

광주항쟁을 이끌거나 이에 가담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당시 폭도로 몰려 구속되거나 지명수배되었다. 광주항쟁에 대한 피의 진압이 있은 직후인 6월 1일 계엄사령부는 광주항쟁 기간 중 1,740명을 검거하여 1,010명을 훈방했고 730명을 조사중이라고 발표하였다. 계엄사는 이 발표에서 "이번에 연행된 사람들 중 사태주동자, 극렬한 악질행위자, 살인범등을 엄격히 선별하여 계엄군법회의에 회부, 엄중처단할 계획이며 일시적인 단순 시위 가담자나 부화뇌동자등 범법행위가 경미한 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석방하겠다"고 밝혔다⁷⁵⁾.

이러한 방침에 따라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구속되거나 지명수배되었다. 1980년 6월 5일자로 계엄사는 "서울에서 전개했던 극한적 학생소요사태와 광주사태의 배후조종자 및 주동 극렬분자들은 그동안 당국수사망을 교묘히 피하여 변장과 잠행으로 계속 도피중인 지명수배자"들을 1백만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72. 위 "광주민중항쟁을 보는 관점과 쟁점들", p. 14

73. 이종범, "5. 18의 영향, 한계, 계승", 1988년 5월 19일자 전대신문 (위 "광주민중항쟁을 보는 관점과 쟁점들", p. 15에서 재인용)

74. 광주항쟁의 성격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은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5월민중항쟁: 광주5월민중항쟁10주년기념전국학술대회, 풀빛, 1990 및 현대사사료연구소, 전남사회문제연구소, 사월혁명연구소, 5. 18광주민중항쟁과 한국민족민주운동: 5. 18광주민중항쟁 9주년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75. 1980년 6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

21명을 공개수배하였다⁷⁶⁾.

구속된 사람들⁷⁷⁾은 재야, 도청 주요간부, 기동타격대, 학원반 I, 학원반 II, 학원반 III, 학원반 IV, 학운동 자위대반, 도청 관련 시내반, 투사회보반, YWCA반, YWCA관련 시내반, 차량통제반, 교사반, 목포지역, 무안지역, 화순지역, 영암지역, 나주지역, 함평지역등으로 나누어 기소되었다⁷⁸⁾. 이들에게 구속된 죄명은 내란수괴, 내란 중요임무종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방조, 내란 부화수행, 계엄법위반, 소요죄등이었다. 이리하여 광주항쟁과 관련하여 유죄확정된 사람은 424명에 이르렀다⁷⁹⁾. 이들이 법정에서 '내란죄'로 사형과 중형을 선고받고 있는 동안 정작 '내란자'들은 그들을 희생으로 삼아 권력을 즐기고 있었다. '내란시대'의 우스꽝스러운 '풍속도'였다.

② '폭도'들의 원상회복 방안

이제 이들에게 '폭도'의 누명을 벗기고 전파자로서의 악명을 떨쳐내 주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비단 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요구는 아니다. "강산이 변하도록 차디찬 땅 속에 누워 한 맷한 두 눈을 채감지 못하는 5월의 영령들에게 덮어씌어진 폭도라는 누명은 벗겨져야 하며 누가 과연 폭도였는지를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⁸⁰⁾라는 절규는 바로 죽은 자에 대한 신원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법률적 조치로 채워져야 한다.

1993년 5월 25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형미실효자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형선고실효가 되지 않은 81명 전원이 이날자로 특별사면 되었다. 이날 사면된 인사 중에는 홍남순 변호사, 민주당의 박석무·정상용의원, 서경원 전의원, 정동년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별사면에 이어 법무부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이 확정된 424명 전원

76. 이때 수배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1980년 6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 장기표(서울대생), 심재권(서울대생), 심재철(서울대생), 이철(서울대생), 김부겸(서울대생), 이해찬(서울대생), 박계동(고려대생), 신계륜(고려대생), 설훈(고려대생), 조성우(고려대생), 장신규(성대생), 김규복(연대생), 박광호(연대생), 박성혁(서강대생), 김광훈(한신대생), 배기선(국민대생), 이현배(전 회사원), 박정훈(무직), 송창달(무직), 김병곤(무직), 김태홍(기자협회장)

77. 구속자 명단은 위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의 책 II, p. 705이하 수록.

78. 이들에 대한 공소장은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의 책, p. 377 이하 및 위의 책 II 참조.

79. 그러나 이들만이 명예회복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 광주항쟁이 끝난 후 그 항쟁을 기리고자 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행을 면하지 못하였다. 정수만씨와 같은 유족들의 추모제와 관련하여 구속되거나 광주항쟁을 왜곡보도한 대구방송국을 방화한 계명대생 류동인 군등이 구속되기도 하였다.(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위의 책, p. 343).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히려다가 분신, 투신한 젊은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마저 보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80. 전계량, 위의 글, p. 11

의 전과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것도 함께 이날 발표하였다⁸¹⁾.

③ 원상회복조치의 한계

김영삼 정부는 지명수배 해제, 전과기록 말소등의 가시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광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전과기록말소조치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과상적인 것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전과기록'은 말소되었으나 '전과' 그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내란 주요임무수행자'로서의 유죄판결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항쟁 가담자로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이들은 "광주민중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만큼 그 민중항쟁을 단죄한 군사재판은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⁸²⁾.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재심의 요건은 대단히 까다롭고 이러한 요건을 통과하여 재심이 받아들여지기란 어렵게 마련이다.

피해자들에게 씌워진 전과기록은 삭제되었지만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군사재판의 판결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더구나 당시 진압의 책임자들은 각종 훈장등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대접받고 있는 뒤집어진 현실⁸³⁾은 오늘의 정의와 불의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⁸⁴⁾.

(3) 미흡한 정부의 사죄

'폭동'과 '폭도' '불순분자' 등의 이름으로 매도당한 광주항쟁은 단순히 구속자들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었다. 광주시민 전체가 그 희생자였다. 더 나아가 오랜 독재의 터널에서 막 피어나려던 민주주의를 향해 뜨거운 열망을 지녔던 모든 국민들도 광주의 비극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광주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군부와 정부의 진정한 책임을 통감하며 그에 대한 사죄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희생자와 광주시민, 나아가 온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의 최소한의 조치가 된다.

그동안 광주항쟁의 피해자와 광주시민에 대한 사과는 '광주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전대통

81. 1993년 5월 26일자 한국일보 기사.

82. 정경훈, 위의 글, p. 26

83. 광주항쟁을 진압한 당시의 신군부는 1980년 6월 20일 진압작전(충청작전) 유공자에게 각종 훈장과 포상을 수여했다. 그 중 정호용 특전사령관, 박준병 보병 20사단장이 받은 충무무공훈장은 전시에나 받을 수 있는 특급훈장으로 알려져 있다.(뉴스메이커, 1993년 5월호, p. 81)

84. 1994년 5월 16일자 한겨례신문 기사.

령을 비롯하여 노태우 전대통령, 김영삼대통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겉으로 보면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그 사죄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언동이 뒤따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죄는 말장난에 그치거나 면책용 발언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한 사죄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죄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제반 진상규명, 가해자처벌, 금전적 배상등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그 사죄에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특별결의 형식을 빌릴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국회의 결의를 빌려 과거의 과오에 대한 사죄를 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태평양전쟁 발발후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수용조치에 대한 잘못을 의회결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바가 있고 최근 일본은 2차세계대전의 과오와 재발방지의 결의를 의회에서 준비중이다.

라. 피해자 배상

(1) 5공 당시의 '위로금' 지급

--'도적의 의적놀음'

광주항쟁의 진압 직후 그 원인을 일부 폭도의 사주와 선동으로 몰면서도 희생된 시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상조치를 취했다. 비록 '위로금'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지만 '폭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조치였다. 그것은 사실상 군대의 과잉진압, 학살사실을 반쯤은 시인하는 행동이기도 하였다. 정부는 그해 6월 6일 광주항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에 대하여 위로금 4백만원과 장의비 20만원등 모두 4백2십만원씩 주고 부상자에게는 10만원씩 지급하며 완치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⁸⁵⁾. 그러나 이 가운데 폭도.난동자로 규정된 36명의 유가족은 '위로금' 지급에서 제외되었다. 더구나 이 위로금은 국가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재해의연금과 광주항쟁 직후 모아진 국민성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⁸⁶⁾.

뒤에서 자세히 보는 것처럼 5공정권은 5.18묘역을 폐쇄하기 위하여 '전남지역개발협의회'라는 단체를 내세워 이전공작을 시도하게 된다. 묘를 이장하는 유족들에게는 1천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이장비 50만원을 지급하였다. 2년여에 걸친 거부 투쟁끝에 묘지이장을 전제로 한 지원금 수령을 거부해 온 유족들에게도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돈도 이 지역 상공인들에게 반강제로 할당된 성금에서 나왔

85. 1980년 6월 6일자 동아일보 기사. 이 보도에 따르면 그외에도 민간재산 피해보조는 차량과 주유소등에 대해 피해액의 40%를 보조하고 60%를 응자키로 했으며 주택보상은 전파의 경우 보조 3백만원 응자 2백만원, 반파는 둘로 나누어 50% 이상 피해에는 보조 1백만원 응자 50만원, 49%까지는 보조 70만원 응자 30만원씩, 소파는 10-24%까지 보조 70만원, 10% 이하에 보조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보사부는 구호 및 피해보상금 35억원과 취로사업비 10억원을 전남도에 긴급배정했다.

86. 시사저널, 1993년 5월 6일자, p.17

기 때문에 '소경의 제닭 잡아먹기'였으며 또한 '도적의 의적놀음'이라는 비판이 따랐다⁸⁷⁾.

(2) 6공화국의 보상정책

당초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배상을 위한 법안으로는 세가지가 나와 있었다. 3당합당으로 거대여당이 된 민자당이 여론에 밀려 1990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안'과 평민당이 제출한 '5.18 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⁸⁸⁾, 그리고 광주항쟁에 관련되어 해직된 대학교수들이 마련한 '5.18광주민주항쟁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 법률 사이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배상'과 '보상'의 차이가 있다⁸⁹⁾. 배상은 위법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고 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돈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용어의 차이에는 광주항쟁과 그 희생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라는 근본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결국 3당합당에 따라 민정당안을 계승한 민자당안⁹⁰⁾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이 법안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광주항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정부는 1988년 추가신고기간을 그해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정하여 이 기간동안에 신고된 7백4명(사망자 10, 부상 581, 행불 102, 기타 11)을 심사해 그 중 550명을 5.18관련 사상자로 추가했다. 그러나 정식 보상금에 관해서는 평민당은 3억원 '배상', 민자당은 1억 '보상'을 주장하는 등 의견의 차이가 현격한 상태에서 3당합당으로 협상 자체가 물건너가고 말았다. 3당합당 후 민자당은 단독으로 1990년 8월 6일자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 4266호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후 이 법에 따라 2천2백27명에게 1천4백27억4천2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를바 '1차보상'이다. 그러나 당시 2천여명에 달하는 상무대 영창구속.연행자들과 그 중에서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은 2백여명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제외되

87. 시사저널, 1993년 5월 6일자, p.17

88. 평민당안의 주요골자는 우선 적용대상을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유죄판결확정자, 구속자 등으로 하고 나머지 재산피해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자는 6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특별재심을 신청하고 이 청구를 당연재심사유로 하도록 하였다. 공직면지가자등은 면직당시의 직급으로 복직 또는 명예퇴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의 묘역을 국립묘지령에 준하여 시설기준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념사업회를 설립할 것도 정하고 있다. (신기하 외 65인이 1990. 2. 21자로 제의한 법률안 주요골자 참조. 이 법안은 결국 폐기되었다)

89. 이광우, 위의 글, p.161

90. 김동영의원외 216인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하여 1990. 7. 14 여당 단독으로 처리 의결하였다.

었고 다만 형사기소자들을 동법시행령 제12조 1항 소정의 제14등급 상이자로 취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3) 김영삼정부하의 보상정책

기본적으로 김영삼정부의 보상에 대한 광주항쟁의 피해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지난 1990년의 1차보상을 거부했던 피해자들이 김대통령의 '5.13 담화문'에 담긴 정부의 보상방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아라 YMCA 명예회장, 정동년 '5민련' 공동의장등 5.18관련 주요 재야인사들이 보상신청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때 추가 신고된 사람은 90년 1차 신고보다 더 많은 2,750명에 이르렀다. 신고접수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⁹¹⁾.

계	사망	행불	상이		연행, 구금 및 구속
			일반상이	구금상이	
2,750	16	118	764	714	1,138

이 가운데 신고자의 약 50-60%에 이르는 1,612명이 5.18피해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라며 2차심사로 넘겨져 그 판정에 따라 후유증이 일기도 하였다.⁹²⁾

이러한 추가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국회는 '5.10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추가피해보상금으로 280억 원을 신설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추가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일부를 '광주보상지원위원회'가 마련한 보상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위 보상기준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백억원 정도로 밝혀졌다. 추가로 신청한 사람 가운데 1천8백31명에게 3백79억6천8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2차보상'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1, 행불자 4, 상이자 763명, 연행.구금.수형자 1천63명이었다⁹³⁾.

그러나 '5.13특별담화' 직후의 긍정적인 반응은 당시 인기높던 '문민정부'의 개혁작업의 영향과 그 담화에 담긴 바 광주항쟁의 정신이 '문민정부'의 토대라는 '미사여구'에 미혹한 때문이었다. 이 정부하의 보상은 6공화국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법'의 근거하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김영삼정부의

광주정책에 이의와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특히 홍남순 변호사,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성용 신부를 비롯한 5.18피해사제단 15명등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어 광주항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광주민중항쟁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이 개별보상과는 별도로 상무대부지 무상양여등 '집단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통령의 '5.13 담화문'에서 밝힌 추가무상양여문제는 상무대 부지 63만 5천평 가운데 1차양여분 5만평을 포함하여 10만평을 집단보상차원에서 광주에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너무나 인색한 조치라고 반발하였다⁹⁴⁾. 보상문제만 하더라도 '꺼지지 않는 불'로 남아있는 셈이다.

(4) 보상이냐, 배상이냐

김영삼정부하의 보상정책이 근본적으로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 즉 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 자체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것이며 다만 그 과정 진압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사상자등에 대해서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당합당 이후 민자당의 날치기 통과로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등에 관한 법률'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법에 따라 '보상'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흔히 행정법에서의 보상이란 국가공권력의 적법한 행사에 따라 개인이 입은 특별한 회생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것이며, 배상이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라 개인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광주항쟁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배상'으로 하지 않고 '보상'으로 호칭해 온 것은 이와같이 광주항쟁의 진압을 '국가공권력의 적법한 행사'로 보는 전제 아래서 이루어졌던 것이다⁹⁵⁾.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에서는 1993년 2월 9일 보상법의 입법적 부작위 그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을 내세웠다⁹⁶⁾.

① 위 보상법의 명칭에 관하여 : 1980년 5월 17일을 전후한 계엄군의 행위는 헌법 제29조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유독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만 '보상' 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하는 것은 헌법 제2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② 위 보상법 제5조에 관하여: 위 보상법은 5.18민중항쟁과 관련하여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만 보상을 하고 있을 뿐 '구속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은 헌법 제11조(평등권)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뿐만아니라 구속자의 경우 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되

91. '광주화민주화운동 관련자 추가 보상' (민주당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광주민중항쟁해결과 기념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고자료집, 1994.1.25, p. 26)

92. 1993년 11월 17일자 무등일보 기사

93. 이재의, 위의 글, p. 54

94. 1993년 11월 18일자 무등일보 기사.

95. 유남영, 위의 글, p. 550

96. 유남영, 위의 글, p. 552

고 다만 '상이자'와 같이 취급되고 있는 점도 같은 입장에서 유래되고 있다. 구속자들은 조직적으로 대규모 시위와 총기난동 및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의 법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요구를 단순히 '상이자'로 취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⁹⁷⁾. 만약 5.18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였다고 본다면 구속자들은 모두 무죄가 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 된다⁹⁸⁾. 그러나 이들이 여전히 범죄자로 남아 있다면 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는 상실한다. 구속자들에 대한 전과말소, 사면등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재심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원래의 재판이 무효가 된 일은 없다. 이들은 아직도 범죄자이며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남아 있는 것이다.

마. 가해자 처벌

(1) 배상의 한 형태로서의 가해자 처벌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큰 위안이 된다. 가해자 처벌이 배상의 한 형태로 분류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범죄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대낮을 활보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과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피해자에 더욱 심각한 낭폐감과 좌절감을 심어줄 뿐이다. 정의감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결코 '한풀이'나 '보복'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의의 실현일 뿐이다. 죄지은 자를 처벌하는 것이 어떻게 '한풀이'나 '보복'일 수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 모든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살인범을 살인죄로 법정에 세우고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그 피해자의 '한풀이'이거나 '보복'이라고 하는 변론을 한 변호사는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거의 학살자들이 새로운 정권하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던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리이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 불기 시작한 민주화의 바람은 그후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아시아등 전세계의 권위주의정권의 퇴진을 가져 왔다. 이들 나라에서 과거 정치적 이유에 의한 학살, 대량구금, 실종, 고문등 온갖 형태의 인권침해가 새롭게 드러나고 고발되면서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대체로 가해자들은 과도적 정권이나 민간정부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면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심각한 양상

97. 유남영, 위의 글, p.551

98. 우루과이 정부에서는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사정권하에서 정치범으로 고생한 사람들의 재판 및 수감생활 중의 손해배상의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다.(Jose Zalaquett, Confro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Former Governments: Principles Applicable and Political Constraints, Aspen Institute for Humanistic Studies Conference on State Crimes, November 4-6, 1988, p.2)

은 인류의 양심이나 정의감에 반한다는 자각에 따라 유엔 인권위원회는 '불처벌'(impunity)문제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위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둔 상태이다⁹⁹⁾.

(2) 뻔뻔스러운 학살의 책임자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직접 총격을 가한 병사들에게 있다. 그러나 이들로 하여금 무차별 학살토록 명령한 사람에게 더욱 중한 책임이 있다. 12.12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제5공화국의 핵심인사들이 바로 그러한 책임자라는 데에 별다른 의문이 없다¹⁰⁰⁾. 그러나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개인별 범죄내용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이른바 '4인방회의'가 시민들에 대한 발표결정을 한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으나¹⁰¹⁾ 그 과정이나 내용은 여전히 당사자의 항구와 자료의 미공개로 어둠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강경진압이 책임자들로 알려지고 있는 이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한 책임을 부정해 왔으나 그것은 오히려 뻔뻔스러움을 더하는 행동에 불과했다.

"몇사람의 정권욕에 의해 수천 수만 사람들의 삶들을 갈가리 파괴시켜 버렸던 5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불행을 안겨 주었던 일당들은 어떤 식으로든 한 치의 합리화도 허용될 수 없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 수많은 생명체들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짓밟고 권좌에 올라 그 순간부터 탐욕스럽게 재물을 긁어 모으기에 혈안이 되었던 전두환과 이순자 부부, 거기에 뒤질새라 권력을 나누어 가진 뒤 자신의 잘못들을 결코 뉘우칠 줄 모르고 날뛰는 5월 학살의 원흉들, 역사는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게 될까"¹⁰²⁾

99. 자세한 것은 줄고,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 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인권침해범죄자의 불처벌 문제--한국과 아르헨티나 두나라의 경험과 과제, 대한변호사협회, 1994. 6. 15., pp. 7-48 참조.

100. 이광우, 위의 글, p. 158. 김영삼 대통령도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여 전두환 전대통령등이 바로 그 책임자임을 명확히 하였다.(1993년 7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

101. 군고위장성 출신인 한 야당의원이 '4인방회의'에 참석한 당사자 중 한명에게 확인한 사항이라는 전제로 밝힌 그 회의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5.17조치 이후 유독 광주에서 시위 사태가 악화되자 20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실에서 4인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전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진종채 2군사령관 4인이었다. 전. 노. 정은 당시의 실세3인이고 진사령관은 광주를 관할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한 것이다. 이 모임에서 광주사태를 강경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노사령관이었다. 전사령관은 주로 듣기만 했고 정사령관은 외곽을 포위하고 기다리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진사령관이 노사령관의 강경론에 동조하여 강경진압 방침이 정해지고 온건한 대응을 주장했던 광주교육사령부의 윤홍정소장도 전격 교체되었다."(뉴스메이커, 1993년 5월호, p. 81)

102. 박호재. 정명섭, 위의 책, p. 210

광주학살의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다. 그런데 그것을 역사에 맡겨 버릴 수는 없다. 바로 실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3) 전리품으로서의 훈장과 권력을 차지한 광주학살자

광주의 피가 채 셧기도 전인 그해 6월 20일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유공자' 66명에게 각종 훈포장을 수여했다¹⁰³⁾. 발포금지 지시로 무혈진압을 시도하였던 정웅 31사단장과 윤홍정 전투교육사령관은 제외되었고 유혈진압에 나섰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박준병 20사단장에게 충무무공훈장이 수여된 사실은 광주 진압의 진정한 지휘계통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전사령부와 보병제20사단은 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누가 학살작전에 공헌을 세웠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유혈진압을 지휘했던 11공수여단 61대대장 권승만 중령(그 후 승진하여 준장), 도청앞 집단발포를 현장 지휘했던 안부옹중령(현재 소장)에게는 각각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었다. 신군부가 '승전파티'로 나눠가진 이 훈장은 뜻하지 않게도 오늘날에 와서 그들의 학살만행에

103. 포상자 명단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국방부가 국회 광주특위에 제출한 '충정작전 유공 포상자 명단')

성명	소속부대	직책	포상구분	포상일시	포상이유
정호용	특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충무무공훈장	1980. 6. 20	충정작전에 참가하여
박준병	보병20사단장	사령관. 육군소장	"		
최세창	제3특전여단	여단장. 육군준장	"		
조창구	11특전여단 63대대	대대장. 육군중령	화랑무공훈장		혁혁한전공 을 세움
임수원	3특전여단 11대대	대대장. 육군중령	"		
편종식	11대대 3특전여단 11대대 1지역대	육군중위	현무공현장		
최옹	11특전여단	여단장. 육군준장	대통령표창		
신우식	7특전여단	여단장. 육군준장	"		
단체	특전사령부		"		
단체	보병20사단		"		
안부옹	11특전여단 61대대	대대장. 육군중령	무총리표창		
권승만	7특전여단 33대대	대대장. 육군중령	"		

의 관여정도를 입증하는 범죄의 징표로 남게 되었다¹⁰⁴⁾.

광주의 진압부대장들은 대부분 5,6공하에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 공로로 정권의 장악이 가능해 졌으니 당연한 '논공행상'이었다. 당시의 대대장들은 거의 장군으로 진급되었다. 당시의 장군들에게는 사회에서도 요직이 기다리고 있었다. 20사단장 박준병은 국회의원, 특전사령관 정호용은 육참총장, 내무장관을 거쳐 국회의원, 3공수여단장 최세창은 6공말기애 국방장관, 종장으로 예편한 11공수여단장 최옹은 폴란드 대사를 각각 역임하거나 재임중이다. 7공수여단장 신우식은 소장까지 거쳐 관광공사 감사를 지내고 있다¹⁰⁵⁾.

이른바 '문민정부' 하에서 광주항쟁 당시 무차별 진압 지휘를 담당하였던 12명의 지휘관이 여전히 현역으로 복무중임이 확인되어 충격을 준 사실도 있다. 즉 광주진압작전에 참여했던 20여명의 연대장 대대장급 중 12명이 장성으로 11명의 대령으로 1명이 현역 복무중임이 확인되었던 것이다¹⁰⁶⁾. 특히 1993년 5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김동진 장군이 바로 20사단 61연대장으로서 전남도청진압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이 여전히 군부의 핵심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광주항쟁과 그 희생자들을 능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4) 광주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과 검찰의 수사

① 공소시효 문제

광주항쟁을 처참하게 진압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1995년 5월, 만 15년의 경과로 만료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광주항쟁이 끝난 1980년 5월 27일을 기점으로 할 때 공소시효 만료일은 1995년 5월 27일이 된다.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내란, 내란목적살인, 내란예비, 음모, 선전, 선동등의 죄이다. 이 죄목의 공소시효는 15년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과 같이 1980년 8월 16일이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시점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1995년 8월 16일을 공소시효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⁰⁷⁾.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므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기간 중에는 정지되지 아니하고 1995년 8월 15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처벌할 길이 사실상 없게 된다. 내란범죄자들이 내란에 성공하면 권력이 그 수중에 있어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집권 기간동안에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고 따라서 권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는 경과하여 면책되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내란죄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가 진행된

104. 정상용외,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1990, pp. 334-335

105. 시사저널, 1993년 5월 6일자, p. 15

106. 1993년 5월 17일자 한국일보 기사.

107. 이재의, 위의 글, p. 53

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부당하다¹⁰⁸⁾.

민주당과 5.18관련단체들은 광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소시효를 연기하거나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전범등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두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새로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¹⁰⁹⁾. 1993년 6월에는 11만5천8백87명이 '5.18 민중항쟁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접수시키기도 하였다. 실제 공소시효는 절대적인 제도가 아니며 이미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조약등이 체결되어 있는 마당이다¹¹⁰⁾. 공소시효제도는 얼마든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¹¹¹⁾.

② 국민의 고발운동

한편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국민위원회)는 1994년 5월 13일 광주항쟁 당시 진압 책임을 들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두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¹¹²⁾

108. 정웅태, "민족정기 확립위해 '특검제' 절실", 예향, 1995년 5월호, 광주일보사, p. 58

109. 1994년 5월 17일자 문화일보 기사.

110. 공소시효의 제한에 관해서는 줄고, "일본의 전쟁범죄, 지금도 처벌 가능한가", 역사비평, 1993년 봄호 참조.

111. 정부 스스로 해외도피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치토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1994년 2월 24일자 중앙일보 기사) 함주명씨등 장기수들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한 고문범죄 고소 기각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1995년 1월 19일자 한겨레 21 기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소시효의 절대성에 대한 도전의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112. 피고소인 명단과 당시 직책은 다음과 같다.

이름	당시직책	이름	당시직책
전두환	보안사령관	조창구	11공수여단63대대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임수원	3공수여단11대대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김완배	" 12대대장
이희성	계엄사령관	변길남	" 13대대장
진종채	2군사령관	박종규	" 15대대장
소준열	전교사사령관	김길수	" 16대대장
박준병	20사단장	이병우	20사단60연대1대대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윤재만	" 2대대장
최웅	11공수여단장	김영철	" 3대대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지남숙	" 4대대장
정수학	20사단60연대장	정연진	" 61연대1대대장
김동진	" 61연대장	김형곤	" 2대대장
이병년	" 62연대장	박재철	" 3대대장

피고발인들은 당시 진압군 가운데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이었으며 죄목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였다¹¹³⁾. 실로 광주항쟁의 구속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꼭같은 죄목을 이들의 진압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광주항쟁 피해자.부상자.유가족등 322명이 연대서명한 고소장도 함께 접수되었다¹¹⁴⁾. 이 고발장은 "80년 5월의 시민학살은 12.12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들이 정권 탈취를 위해 자행한 범죄"라며 "전씨등 피고발인들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는등 국가기관을 전복하고 저항하는 시민을 총칼로 살상했으므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고발에는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하여 '5.18' 14돌을 맞이하여 망월동묘역과 금남로 일대에 설치된 고발운동창구에는 서명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어 광주에서만 1만명을 넘어 섰다¹¹⁵⁾. 단일 사건에 관한 사상 최대의 고발인 숫자이다. 광주 항쟁과 '동전의 양면관계'에¹¹⁶⁾ 있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관련자 22명도 1994년 5월 14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정권찬탈에 눈이 먼 정치군인들이 김대중씨등 이사건 관련자들이 내란을 꾸민 것으로 조작, 야당을 말살하고 억압체계 구축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전두환, 노태우등 5.17 관련자들을 고발하였다^{117)¹¹⁸⁾}

그러나 현재의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밝혀진 진실에 따라 기소하리라는 믿음을 갖는 국민은 없다. 검찰이 정치권력의 의지를 충실히 관철하는 예속적인 기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난 12.12사건의 기소유예조치에서도 드러났다. 검찰은 12.12사건이 '쿠데타적 사건'이며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는 김대통령의 요구에 너무도 충실히 응답했던 것이다. 광주항쟁 구속자들이 주로 모인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가 1988년 10월 전두환.노태우등 군 고위지휘관 9명을 상대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1993년 무혐의처리하고 말았다¹¹⁹⁾. 이 결정은 피고소인들을 소환 조사하지도 않은 채

권승만	7공수여단33대대장	강영옥	" " 4대대장
김일옥	" 35대대장	오성윤	" 62연대1대대장
안부옹	11공수여단61대대장	이종규	" " 2대대장
이재원	" 62대대장	유일호	" " 3대대장
		김인환	" " 4대대장

113. 이것은 12.12사건에서부터 5.17계엄확대, 5.18, 최규하대통령의 사임, 국보위 설치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다단계 쿠데타'의 한 과정으로 5.18을 해석하는 관점에 서 있다.(정웅태, 위의 글, p. 55)

114. 1994년 5월 14일자 한겨례신문 기사.

115. 1994년 5월 19일자 한겨례신문 기사.

116.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예춘호 전의원의 말(1994년 5월 19일자 한겨례 신문기사)

117. 1994년 5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

118. 그러나 정작 김대중씨는 "두전직 대통령의 행위를 용서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들어 형사고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1994년 5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119. 서울지검은 고소한지 4년만인 1992년 12월 26일 무혐의결정을 내렸으며 고소인이 그후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때 검찰이 내세운 무혐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유남영, 위의 글, pp. 553-554에서 인용)

① 1979년 12월 12일 자의 군병력이동은 "수도권일부 군병력이 청와대 부근을 포위하여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임기 중에 마무리 짓기 위한 무리한 조치였음이 분명하였다.

③ 특별검사제

이러한 이유때문에 특별검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계속 터져나왔다. 지난 1994년 5월 18일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추진위'에서 광주항쟁 14주기를 맞아 낸 성명에서 "김영삼정부는 학살책임자들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소추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⁰⁾. 광주항쟁에 대한 해결과정이 끝없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어느 사이엔가 특별검사제는 광주항쟁을 푸는 '마스타 키'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검제는 광주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사적 조치의 첫발걸음이라는 것이다¹²¹⁾.

특별검사제는 진상규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김영삼대통령과의 면담을 준비하면서 5.18 관련 단체들이 마련한 요구사항 중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적도 있었다¹²²⁾. 그러나 김영삼정부가 이미 역사에 맡기자고 선언했던 상태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기대하는 것은 "산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④ 국제법상의 '제노사이드' 등 인권규범의 적용 가능성

광주학살은 국제법상 규제되고 있는 '제노사이드'(genocide)의 한 형태에 속한다고 볼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수백만명이 학살되는 희생을 치른 후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국제법적 규범을 성문화할 필요가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렇게 하여 생겨난 것이 '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Genocide)이다. 1948년 12월 9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것이다¹²³⁾.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제한된 규모의 예비병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수습한 것으로 동사건은 박대통령시해사건의 수사도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피고소인들의 변명이 일부 증언자들의 증언과 부합하며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1980년 5월 18일 전후의 소위 '광주사태'는 "시위현장에서의 일부 군인과 학생들간의 감정적인 충돌과 악성 유언비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부러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시민을 살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피고소인들의 변명이 일부 증언자들의 증언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소인들의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20. 1994년 5월 19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121.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그것이 알고 싶다, p. 15

122. 뉴스메이커, 1993년 5월호, p. 77

123. 이 협약의 성립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Lawrence J. Leblanc, *The United States and the Genocide Convention*,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1991, pp. 17-33 참조.

여기서 '제노사이드'라 함은 한 민족, 종족, 종교적 그룹등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시킬 의도로 그 그룹의 구성원을 죽이거나,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가하거나, 육체적 파괴를 가져올 계산아래 그 그룹의 생존 조건에 영향을 주거나,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거나 또는 어린이들을 다른 그룹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노사이드 범죄자는 집권자, 관리, 개인 어느 누구든 간에 당사국은 처벌하는 국내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범죄가 저질러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당하게 된다¹²⁴⁾.

문제는 광주학살이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범죄는 주로 일정한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독자성을 갖는 특정 종족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웅 광주지역의 주민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협약의 내용이 이미 국제관습법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한 내용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협약(ICCPR)에서 말하는 '생명에의 권리'(right to life)¹²⁵⁾를 가지는 국민은 위 협약을 이미 비준함으로써 구속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 그 불이행을 유엔 인권 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의 권리'는 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시기에도 박탈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¹²⁶⁾. 따라서 '자위권' 행사로서 정당화하려는 한국 군부의 변명은 이 권리의 제한사유로 합당하지 못함이 분명하다. 위 협약 제6조 제5호는 "부적법한 구금이나 체포의 피해자는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수의 광주시민의 생명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아니라 부적법한 구금에 따른 배상책임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광주항쟁의 피해자들은 별 어려움없이 이 책임을 인권이사회를 통하여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바. 역사교육

1980년 5월 광주의 경험은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적지 않은 파문을 남겼다. 또한 그

124. 이 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Marjorie Ann Browne, *The Genocide Convention: A Background Report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No. 70-185 F, July 23, 1970 참조.

125.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6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천부의 '생명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26. Dominic McGoldrick, *The Human Rights Committee: Its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larendon Press, Oxford, 1991, p. 328.

것은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형상화되었다. 광주항쟁을 기리는 시집과 소설집등이 출간되었다¹²⁷⁾. 이 역사적 사건은 “수동적인 문화활동을 문화운동으로 승화시켜 주는 계기”¹²⁸⁾가 되어 문학.미술.공연.사진등 모든 문화영역에서 그 의미를 확산하는 작업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영역에서 뿐만아니라 광주의 교훈은 보다 공식적 채널을 통해 후세에 알려지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교과서등에 게재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로 교육시키는 일도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길이다. 지금까지 쿠데타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자신들의 뿌리와 집권의 경위, 시대의 성격을 공정하게 서술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침을 관철하였다. 이리하여 초중고의 역사교과서속에 현대사는 왜곡되어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5공화국을 다룬 부분에서 “10.12사태 이후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12.12사태가 일어났다”고 기술해 하극상의 쿠데타일 뿐인 12.12사건을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광주 항쟁에 대해서는 “이를 전후하여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고만 써 놓아 이 과정에서 물리적 진압, 광주시민의 희생들은 온전히 빠져있다¹²⁹⁾.

그러나 1996학년 이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국사교육내용전개 준거안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준거안(시 안)내용 중에 ‘대구폭동’을 ‘10월항쟁’으로 바꾸자는 교육내용안에 대해 학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어나 결국 이 문제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막고 말았다¹³⁰⁾. 광주항쟁은 아직도 정당한 자기 위치를 미래 세대에 있어서도 차지할 공식적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사. 박물관, 자료관설치등

현실에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광주항쟁은 이후의 역사속에서도 계속 새로이 조명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주항쟁에 관한 모든 기록과 자료가 후세에 그대로 보존.인계되어야 한다. 당시 광주의 진상에 관한 모든 자료, 그후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협난한 투쟁의 과정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자료들이 함께 이 보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박물관과 자료관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역사의 박제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영원히 기리고 남기기 위한 일차적인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광주관련자들은 박물관이나 자료관 설치를 생각할 겨울을 가지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의 운동도 운동이려니와 보다 더 먼 앞날을 대비한 기초도 다져 놓아야 할 때이다. 자료는 언제나 산일되기 쉬우며 세월은 당시의 증인들마저 잡아가게 마련이

127. 문병란. 이영진 편, 누가 그대 큰이름을 지우랴--5월 광주항쟁 시선집, 인동, 1987 및 부활의 도시 --광주항쟁 10주년 기념작품집, 인동, 1990등이 있다.

128. 홍희담. 윤정모, 오월에서 통일로--통일화가 홍성담문집, 청년사, 1990, p. 210

129. 1993년 1월 1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130. 1994년 3월 20일자 조선일보 기사

다. 지금은 누구나 쉽게 보고 접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몇십년후가 되면 모두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자료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광주항쟁을 연구하고 순례하는 모든 국민들이 한 눈에 다 찾아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월 관련 단체들이나 광주시민들이나 정부당국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박물관, 자료관의 설치에 대한 제안이나 구상을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¹³¹⁾.

아. 묘역의 정화 및 성역화

(1) 수난의 망월동 묘역

--망자의 편안한 안식조차 용납하지 않았던 군사정권

광주직할시 북구 운정동 산 46번지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 흔히 일반에게 ‘망월동묘지’로 널리 알려진 이 묘역의 역사야말로 바로 광주항쟁의 역사적 평가의 변천, 그 유족들의 수난사와 궤를 같이 한다. 그해 5월 27일 새벽까지 계엄군에 의해 숨진 주검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126구가 이날 광주시청 청소차에 실려와 이곳에 집단으로 묻혔다. 이렇게 해서 망월동묘지가 생겨난 것이다¹³²⁾.

이들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묻힌 이 묘역에서 처음에는 제대로 위령제조차 지낼 수 없었다. 당초 유가족들은 이미 1980년 5월 31일 ‘5.18광주의거 유족회’를 일찌감치 발족시켰으나 관련 당국의 방해로 현판식조차 거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들이 1981년 5월 18일 제1주기 위령제를 거행하려 하였으나 당국의 와해공작으로 망월동 묘지에서 약식위령제로 만족해야 했다. 그 위령제에서 추도사를 낭독했던 유가족 정수만은 경찰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등 혐의로 구속되었다¹³³⁾.

1983년들어 망월동 공동묘지의 성역화를 우려한 당국은 묘지의 분산 이장계획을 은밀히 진행하였고 실제로 그해 3월 4일 최초로 1기를 이장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학살의 책임자들은 도대체 죽은 사람들의 무덤조차 두려워 가만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5공화국 정권의 대표적인 과오로 꼽히는 ‘5.18 정신에 대한 파괴이고 한 번 죽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행위’에 다름아니었다¹³⁴⁾. 이에 대항하여 유족 30여명은 3월 6일 고속버스터미널에 모여 ‘광주의거 진상규명’과 아울러 ‘묘 이장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4월 18일에는 “묘를 이장하면 1천만원의 위로금과 50만원의 이장비를 받는다”는 소

131. 다만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이 마련한 기념사업 마스터플랜에 들어 있는 ‘5.18기념관’에서 ‘5월의 어머니’를 주제로 시비, 민주인사추모비, 가족 사진전, 학생운동 사진전, 5.18당시 저항 기념사진 및 유물자료 전시, 부상자.행복자들의 실상, 유가족들의 수난, 국회청문회 내용, 세계각국의 핍박사전시등을 계획하는 구상이 있다.(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위의 책, p. 152)

132. 시사저널, 1993년 5월 6일자, p. 16

133.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기록, 위의 책, pp. 251-252

134. 박호재. 정명섭, 위의 책, p. 268

문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였다¹³⁵⁾. 5월 18일 제3주기 위령제를 개최하고 6월 13일에는 추모기도회를 거행하였으며 유족회 명의의 호소문을 낭독, 배포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이것을 구실삼아 유족들에게 이장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위로금 1천만원의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일부 소극적인 유족들을 부추김으로써 내부 분열을 기도하였다. 실제 당국의 이러한 부추김에 넘어간 유족 12명이 당시 유족회 회장이던 전계량의 직장과 집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 1984년 4월 1일까지 당국의 '이장공작'으로 이장된 묘가 총 24기로 늘어 났다¹³⁶⁾. 1984년 11월 이러한 시도는 많은 사회단체에 의하여 저지, 중단되었다.

5공정권 내내 유족과 부상자등 희생자들의 수난은 거듭되었다¹³⁷⁾. 1984년 5월 18일에는 시민 학생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망월동 공동묘지에서 제4주기 위령제를 거행했고 도청앞에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유족 4명이 광주경찰서로 연행되었다. 10월 11일에는 박관현, 기종도, 이성학등 3명이 추모예배에 참석하려다 강제납치되어 분산 격리되기도 하였다. 1985년 2월 대통령의 광주순시때 '묘소 강제이장 반대'를 요구하던 유족 2명이 강제연행되었다¹³⁸⁾.

5공화국이 끝날때까지 망월동 묘지와 그 유족을 둘러싸고 끝없이 이같은 숨박꼭질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집요하고 교묘한 공작,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민주화와 더불어 망월동 묘지는 '민주화의 성지'로 전국의 학생 시민들로부터 참배와 숭모,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결의의 장이 되어 갔다.

(2) 국민의 참배 물결, '민주화의 성지' 된 망월동

망월동에는 학살자들에 대한 단호한 거부가 이어지면서도 여기에 묻히려는 '민주열사'들이 늘어나기만 하였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스스로의 집권시기에도 공공연히 방문할 수 없었다. 노태우대통령에 이어 김영삼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광주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광주항쟁에 대한 빚을 지니지 않은 자만이 망월동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었다.

제5주기 추모제에는 전국의 시민, 학생 1천여명이 참석함으로써 이제 광주시민이나 유족회의 행사차원을 넘어섰다. 1985년 2.12총선에 따라 광주문제가 제도권 정치판에도 계속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였다. 제7주기 추모제와 기념식에는 민추협 공동의장이었던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총재와 김대중 민추협공동의장의 추도사가 차례로 대독되었다¹³⁹⁾. 5.18이 처음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대접받기 시작한 89년 5월 망월동에는 순례인파가 하얗게 길을 메웠다. 망월동 제3묘역에는 5.18 광주항쟁 때 산화한 넉 197기의 묘 외에도 그 이후 10년간 민주화를 위해 숨겨간 '열사'들의 묘까지 200여기의 묘가 묻혀 있다. 어

135. 묘지이장은 당국은 '뒷전'에서 숨은 상태에서 '전남지역개발협의회'라는 유령단체가 추진하였다. (박호재, 정명섭, 위의 책, p. 267)

136.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기록, 위의 책, p. 253

137. 유족들과 유족회에 대한 탄압의 일지는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광주민중항쟁비망록: 망월동 묘비명, 도서출판 남풍, 1989, p. 347 이하 참조.

138.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기록, 위의 책, p. 254

139. 윤재걸, 위의 책, p. 192

느새 광주의 망월동은 '민주화의 성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3) 망월동 성역화 계획과 운동

망월동 묘역의 성역화 문제는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문에서 약속한 이후 구체화 되었다. 이 담화 이후 광주시는 "망월동 시립공원묘지와 맞닿은 인근 3만평의 부지를 매입, 희생자묘역을 새로이 조성하고 이를 성역화해 나갈 방침"이었으나 곧바로 일부 광주시민의 심각한 반대에 부닥쳤다. "공청회등의 시민의 견수렴과 정도없이 졸속우려가 높은 특정 기술진에게만 맡겨 사업을 그르친다"는 의견과 "5.18 당시 폐배의 현장이었던 만큼 시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역사의 교육현장이 될 수 있는 장소인 상무대로 희생자묘역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등이 반대의 근거였다. 그 이후 각계 시민대표로 구성된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켰으나 묘역이전 공방에 힘몰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⁰⁾.

4. 완전한 배상, 완전한 청산을 향하여

가. 완전배상, 완전청산을 위한 요건

지금까지 검토하였듯이 광주항쟁에 대한 미흡한 배상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조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항쟁의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어야 한다. 현재의 검찰이나 헌법재판소등에 이를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특별히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특별검사제도는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검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수사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 예산, 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 특별검사제도가 여야간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국회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사법경찰관을 배치하고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이와같이 규명된 진실에 따라 광주항쟁의 피의 진압을 명령한 주모자들이 기소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진상규명에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광주항쟁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정의를 실현하는 장애물이나 죽쇄가 될 수 없다. 이것

140. 자세한 것은 1993년 11월 12일 무동일보 기사

은 우리 시대의 정의를 실현하고 후세에 정의의 역사관을 남기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일단 이들의 기소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감정이 녹아내리고 국민의 정의감이 충족된다면 여론의 추이를 보아 감형 또는 사면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째, 현재의 '보상법'은 폐지하고 이를 확대 개정한 '배상법'을 제정하여 광주항쟁의 역사적 정당성과 이를 진압한 행위가 불법적이었던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상법'에서 제외된 구속자는 말할 것도 없고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의 수준이 실질적 피해 배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네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표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 결의 속에는 단순히 5.18 당시의 진압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들과 광주시민에게 가해진 탄압과 모욕에 대해서 사죄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확실히 추진한다. 먼저 민간 법정이든 군사법정이든 간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간단한 절차로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특별소송절차법을 제정한다. 또한 광주항쟁에 가담, 지지하였다는 이유등으로 해직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도록 조치하고 그 해직등의 기간동안 받은 모든 불이익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이 땅과 이 역사 위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하여 각급 교과서에 광주항쟁의 진실을 제재하여 국민들에게 가르키고 또한 광주항쟁일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수호한 날로서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3.1운동, 4.19혁명과 마찬가지로 민족사의 빛나는 한 장면으로서의 광주항쟁은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 그 정신을 기리 계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광주항쟁의 모든 증언과 자료를 보관할 자료관, 박물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기념하는 기념관과 기념물이 광주 또는 전국에 설치되어야 한다. 광주항쟁의 희생자들이 묻혀있는 망월동묘역은 희생자단체와 광주시민의 의사에 따라 성역화되어야 한다.

나. 기념사업 등을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과 출연

(1) 공익재단 설립의 필요성

위의 각종 배상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필요하다. 설치된 기념관, 박물관등을 유지, 운영하고 묘역을 관리하는 일을 종합적으로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다고 이 일을 광주시 또는 어느 정부기관에 맡기는 것도 부적절하다. 독립된 민간단체가 항구적으로 이 일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재단이 맡아야 할 또 다른 과제는 희생자 유족, 부상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등 복지와 보호이다. 일시불의 금전적 배상으로 배상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상자의 경우 계속적인 치료비가 소요되거나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광주항쟁의 여파로 정신질환이 생긴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유증과 정신적 피해는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도 있다¹⁴¹⁾. 광주항쟁의 희생자의 유족과 부상자등의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비용의 부담과 이를 치료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광주항쟁을 연구하고 일반 대중과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재를 개발하며,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일도 이 재단이 맡아야 한다. 광주항쟁을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기념하며 대중화하는 일을 맡을 기관이 탄생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⁴²⁾.

(2) 공익재단의 설치와 출연

이러한 재단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출연하는 공익법인이어야 한다¹⁴³⁾. 여기에 광주시와 일반 국민이 힘을 보태으로써 광주항쟁의 기념사업이 국민적 염원을 담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일단 각종 사업과 시설을 운영할 기금을 먼저 출연하고 국민들 사이에 '벽돌 한장 쌓기 운동'을 통하여 성금을 모집하여 그 기금을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운영경비는 그 기금의 이자로만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출연하더라도 이 재단과 기금을 운용할 이사회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등 피해자 대표, 광주시민의 대표, 전국적 명망있는 인사들,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성이야말로 과거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광주항쟁의 기념사업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출연하지 않는다면 이 재단은 순수한 민간의 재원만으로도 구성되어야 한다¹⁴⁴⁾. 전국민적

141. 나치에 의해 학살된 유대인들의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정신적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보라. John J. Sigel & Morton Weinfeld, *Trauma and Rebirth :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the Holocaust*, Praeger, New York, 1989.

142.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는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Simon Wiesenthal Center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 자신이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캠프를 탈출한 시몬. 비센탈에 의해 설립된 이 센터는 유대인학살(홀로코스트)의 기억을 보존하고 같은 참화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교육, 연구, 출판사업등을 하고 인종편견에 반대하는 전세계적 운동을 벌이고 있다.(Simon Wiesenthal Center Annual, Volume 6, Philosophical Library, Los Angeles, 1989 참조)

143. 유남영 변호사는 이 재단의 명칭을 '5.18기념사업회'로 하고 기념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선언하자고 제의하고 있다.(유남영, 위의 글, p. 555)

144. 현재도 '5.18기념재단'(이사장 김동원)이 구성되어 있으나(5.18기념재단은 1994. 3경 재

인 호소와 호응으로 구성되는 민간재단이라면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충분하지 않더라고 국민의 성금과 모금에 의한 재단이라는 점에서 광주항쟁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모금행위는 정부에게 일정한 출연을 요구하는 압력이 될 수도 있다.

5. 결 론

- - - 눈까마스 Never Again

“이제 하나의 역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민중항쟁은 현대한국사회의 모순구조가 민족의 자주와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사회의 건설로 그 극복의 방향을 찾아가는 멀고도 험한 도정에서 내내 한국사회운동의 기념비적인 원천으로 늘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다.”¹⁴⁵⁾

이토록 광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호수가 되고 있다. 동학농민전쟁 이래 민족자주와 민중주체의 민족적·민주적 지향을 갖는 사회운동의 흐름이 이 호수로 흘러들어 1980년대의 거대한 민족적 각성과 민주적 개혁의 흐름이 여기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주항쟁은 한반도에서만 끝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모든 인류의 투쟁과도 맞닿아 있다¹⁴⁶⁾. 동서고금의 어느 역사에서도 ‘학살’이라는 이름의 인류의 죄악이 가끔 발견되곤 한다¹⁴⁷⁾.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이 제대로 내리고 그 희생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진 역사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정의가 실현된 나라의 사례를 우리는 우러러본다. 어어 우리의 땅에서도 꼭같이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단호히 결단해야 한다.

“역사의 어느 중요한 소용돌이를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것은 보다 선호한 미래사회의 단초를 이 시대에 축척코자 하는 모든 동시대인의 의무이자 필연적인 갖춤이다. 5월 역시 당연히 어떤 유보적인 형용사의 덧대기가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시대의 과오가 확인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2차대전후 나

단 설립을 위한 기금마련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이 재단을 모체로 하거나 또는 국민적 재단으로 확대 재편하여 모금운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145. 위 “광주민중항쟁을 보는 관점과 쟁점들”, p. 25

146. 1994년 5월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에 의해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광주민중항쟁이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면서도 인류의 역사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보편적 가치인 자유, 정의, 평화를 전 세계에 알려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모임, 위의 책, p. 220)

147. 1915년 아르헨티나에서 80만명이, 1933년에서 1945년까지 6백만명의 유대인이, 1971년 방글라데시에서 3백만명이, 1972년에서 1975년까지 10만명의 후투인이 각각 대량학살되었다. (학살의 자세한 역사에 대해서는 Leo Kuper,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81 참조)

치 협력분자들의 죽음으로 단죄해 버린 자유프랑스의 용기를 비로서 찬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친일분자들을 냉엄히 단죄하지 못한 해방정국 이후의 오도된 이 땅의 현대사를 두고 가슴을 치며 통탄할 자격이 생긴다.”¹⁴⁸⁾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을 수는 없다’는 말이 광주를 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80년 광주의 비극에 책임있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마당에 용서할 수는 없다. 수많은 어머니들의 가슴에 그토록 아픈 끗을 박고도 모자라 남은 유족들과 광주시민을 조롱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이 아직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마당에 용서가 있을 수 없다. 진정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눈까마스’(Nunca Mas).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재정권과 대량의 인권침해를 겪으면서 수만명의 ‘실종자’를 낳았던 아르헨티나에서 처절하게 외쳐졌던 구호이다¹⁴⁹⁾. 우리의 역사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역사속에서도 상받을 자가 상을, 벌받을 자가 벌을 받는다는 엄중한 교훈이 아로새겨지지 않으면 이 구호는 허사가 된다. 우리 현대사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큰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었던가. 언제 한번 불의한 자를 정의의 법정에 세워 보았던 적이 있었던가. 불의한 자는 큰소리치고 정작 의로운 자는 숨어지내야 하는 숨막히는 세월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사실, 진실은 반드시 밝혀 진다는 사실, 그리고 정의는 마침내 불의를 이기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이 광주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통하여.

148. 박호재. 정명섭, 위의 책, p. 276

149. 이 구호는 ‘Never Again’의 뜻으로 ‘아르헨티나 실종자 전국위원회’의 보고서의 이름으로 붙여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NUNCA MAS, A Report by Argentina’s National Commission on Disappeared People, Faber and Faber, London, 1986 참조)

731부대(일명, 惡魔部隊)와 그 청산

이토 나리히코(Forum Ninety, 일본중앙대 교수)

1. 작년 이후, 일본 시민운동측은 일본제국 육군이 저지른 대표적인 전쟁범죄의 한 예로서 731부대에 관한 전시회 행사를 일본 전역에 걸쳐 열어왔다. “731부대”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고 생물학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비밀군대였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생물학전 계획을 개발한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전 만주지역의 하얼빈(Harbin) 24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한 평판(Pingfan)에 1941년 731 부대의 사령부를 건립한 이래,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체 실험을 통해 3천명이 넘는 중국인, 러시아인, 한국인, 미국인, 오스트레일리아인 등 타국인들을 매우 잔인하게 희생시켰던 것이다.

2. 731부대 계획은 지난 제 2차 세계대전중에 일본제국 육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가장 잔학한 전쟁 범죄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동경에서 열린 극동지역에 관한 국제군사재판(1946년 5월, 1948년 11월)에서, 이 전쟁범죄는 기소되지 않았다. “동경 전쟁범죄재판의 기소문의 초안을 작성했던 국제집행위원회의 주요 멤버들은 일본이 화학 무기 및 생물학 무기를 사용한 사실에 관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찌기 1945년 12월에서 1946년 4월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관련하여 검찰측의 논거인 8개 항목 가운데 2개 항목으로 쓰여질 계획이었던 것이다.” (Peter William, David Wallace 공저, [731부대—일본육군의 극비사항], Hodder & Stoughton 출판사, 1989년, 15쪽 인용). 연합군측은 731부대(그리고 또한 100부대)의 전대원을 미국 정부와 협력한다는 교환조건 하에서 불기소처리했다. 미국 육군은 731부대의 모든 연구결과와 자료 및 정보를 인수하여 생물학 무기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했고, 한국전쟁에서 이 무기를 사용했다.

3. 일본육군은 1915년에 이미 독가스에 관한 비밀 연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 독일은 서부전선에 최초로 독가스 공격을 시작한 바 있다. 1925년 6월, 많은 국가들이 질식성가스, 유독성가스, 혹은 기타 가스 및 세균무기를 전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일본과 미국은 이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다. 일본 군대의 일부 고위장교들은 이미 1930년대 초에 육군 의과대학 방역학

과의 교수였던 젊은 과학자 시로 이시이 박사로 하여금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도록 장려하였다. 이시이는 전쟁터에서 사용할 정수 필터를 발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1933년에 방역연구소(Boek Kenkyu-shitsu)를 세웠다. 이 연구소가 731부대의 최초의 시발점이었다.

4. 일본군의 중국침략(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난 이후, 이시이는 만주를 방문하여 자신의 연구소를 세울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였고, 1933년 하얼빈 외곽에 이 연구소를 세웠다. 그의 작업은 만주의 취약한 위생상태로 말미암아 위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의 부대의 진짜 목적은 공격용 생물학 무기의 연구였던 것이다. 그후 몇 년간 그의 부대는 약 300명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약 50명의 남성이 의사였다.

1938년 6월 30일, 일본 관동군은 '관동군 방역급수부'라는 이름으로 통합 이시이의 부대를 위해서 방대한 부지를 평판에 조성하였다. 이시이의 부대는 토고 대장의 이름을 따서 토고 부대라고 불렸는데, 토고 대장은 1905년 러일전쟁의 영웅이었다. 이시이 부대는 1939년 평판으로 이동하였다.

5. 평판 지역은 관동군의 특수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그 지역 내에 혹은 그 주변에는 그 누구도 거주할 수 없었으며,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일본군 항공기조차도 그 지역 상공의 비행이 금지되었다. 건물들을 짓는데 2년이 소요되었고, 그 안에서 3천명의 인원이 살면서 작업하였다. 제2차 노모난 전쟁(Nomonhan War, 1939년 6월-9월)이 있은 후 2년 뒤인 1941년 이래로 이시이의 부대는 "731부대"로 불리게 되었다. 731부대는 다음과 같이 8개의 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일반 행정

1사 단 : 세균 연구

2사 단 : 전투 연구 및 실전 실험

3사 단 : 정수 필터 생산

4사 단 : 세균 대량생산 및 저장

교 육 : 훈련

자 료 : 실험에 필요한 자료

진료소 : 병원

**각 사단의 장은 대령 혹은 소장이었음.

제 1 사단 휘하에는 몇몇 종류의 세균 : 가령 이질, 콜레라, 탄저열, 결핵, 장티푸스, 혈청, 리케차, 페스트 등을 연구하는 연구 그룹이 많이 있었다. 이런 연구 그룹 외에도 "마루타"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 그룹이 있었다.

6. "마루타"는 무엇인가? Peter William과 David Wallace는 [731부대의 극비사항]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마루타"는 731부대의 연구활동을 위해 동원된 죄수나 희생자였다. 그들 대부분(약 70퍼센트)은 일본의 만주지역 점령과 수탈에 저항한 중국인과 러시아인 군인, 지식인, 노동자였다. 그들은 일본 비밀정보국에 의해서 체포, 고문당했으며, 그들의 활동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인간 기니아 피그(실험용 쥐)"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731부대의 "특수 위탁물"로 보내졌다.

1941년 평판에 731부대의 부지가 세워지고 난 이후 3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체 실험으로 희생되었

다. 또한 어린 소년, 소녀들,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들, 심지어는 임산부들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희생되었다. 731부대의 감옥으로부터 살아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생체 실험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8월 종전 바로 직전에 감옥에서 독가스에 의해 살해되었던 것이다.

7. 731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었던 한 젊은 일본군인은 1984년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회고하고 있다. "내 나이 18살에 나는 새로 들어온 죄수를 검진하는 특수분대에서 731부대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죄수들은 모두 일본말로 장작개비라는 뜻을 가진 "마루타"로 지칭되었다.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번호만을 부여했다. 마루타는 단지 번호였고, 한 개의 실험용 재료에 불과했다. 그들은 인간으로 간주되지조차 않았던 것이다. 나는 특히 두 소녀를 기억한다. 하나는 중국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인이었다. 중국인 소녀는 21살이었는데 반(反)일본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숙소나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러시아인 소녀는 19살이었고 키에프 출신이었다. 중국인 소녀는 약 2년간 생존했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인 소녀는 막판에 독살되었다." ([731부대], 36쪽)

많은 여성 죄수들은 성병을 연구하는 데 희생되었다. 한번은 한 임산부가 성병에 감염되었는데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자 둘다 모두 해부당했다. 결국, 731부대에서 모든 죄수들은 짐승처럼 살해되었고, 그들 신체의 모든 조각들이 군사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소모되었다.

8. 이시이 중장은 페스트와 콜레라를 "두 가지 기본 무기"로 지적한 바 있다. 731부대는 전 세계 인구의 두어 배가 넘는 인명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세균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세균을 옮길 수 있는 전달 체계—즉 벼룩, 쥐, 자기(porcelain) 폭탄—to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노모난 전쟁에서 폭탄 및 다른 생물학 무기들을 사용했고, 그후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무기들에 희생된 사람들은 중국인 군인들이나 민간인만이 아니라 일본 군인들도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무기의 사용이 이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9. 히로시마에 원폭투하가 있고 소련군대가 만주에 진입하고 난 후, 8월 9일 관동군 사령관인 야마다 대장은 731부대의 모든 증거물을 없애버리고 남쪽의 서울로 소개할 것을 명령했다. 우선 죄수들이 독가스로 살해되었으며, 731부대에서 노역하던 6백명의 만주인과 중국인들이 기관총으로 사살되었다. 그들의 시체는 소각로에서 불타버렸다. 인체에서 적출한 표본들 역시 소각로에 넣었지만 다 태워 없애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성가리 강(Sungari River)에 던져버렸다.

일본제국군대의 전쟁범죄 : 731부대와 그 배경

인간의 몸으로부터 추출되어진 표본도 넣어졌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다 태울수가 없었다. 그들은 나머지를 순가리강에 내다 버렸다. 731부대의 죄수들은 철저히 처리되었다. 731부대의 이시장군과 주요간부들은 비행기로 평판에서 일본으로 탈출하였다. 최종적인 소개작업을 위해 남겨진 몇몇 부대원들을 제외한 731부대의 나머지 부대원들은 기차로 평판으로부터 소개되었다.

10. 10년전에 나는 내눈으로 일본군에 의해 잔인한 실험과 잔악한 행위가 행해진 그 장소를 직접 보기 위해 평판을 방문했다. 731부대의 본부 건물은 지금 중학교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학교의 2층에는 731부대의 유물을 보여주기 위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731부대 박물관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박물관을 보면서 유물이 거의 없다는 데에 충격을 받았다. 일본군과 731부대는 완벽하게 파괴를 하였기 때문에 잔악행위의 증거는 거의 사라졌다.

11. 731부대의 잔악한 행위는 도쿄에서의 국제군사법정에서 아니라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하바로스크 소련군사법정에서 최초로 밝혀졌다. 만주에서 소련군에 의해 체포된 12명의 일본군이 기소되었다. 하바로스크 재판은 거의 전적으로 자백에 의존했는데 그 자백에서 731부대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은 731부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일부 일본작가들과 언론인들은 731부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탐정 소설가인 모리무라 세이치씨가 '악마의 포식'이라는 3권의 도큐멘타리 책을 쓸 때 까지는 부대에 의한 잔악행위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다려야했다.

12. 이제 우리 일본국민들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731부대와 같은 왜 이러한 잔악행위들이 행하여졌는가를 질문해야한다. 왜 인간생활을 돌봐야 하는 많은 의사들이 인간의 삶과 인간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731부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731부대에서 실험실부를 포함한 주요 부대장으로 근무했던 가와시마 소장은 하바로스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질문(검사) : 피고, 우리에게 왜 박테리아 전쟁이 일본이 아닌 만주에서 행해지고 있었는지의 이유에 대해 말하겠는가?

가와시마 : 만주는 소련과 인접해 있는 국가이고 소련과 전쟁을 치를 경우에는 만주에서 박테리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편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주는 박테리아를 실험하는데 편리한 장소였다.

질문 : 편리하다고, 어떤 식으로?

가와시마 : 만주에는 광활한 토지가 있었고 충분한 실험물이 있었다.

질문 : '실험물'이라니 무슨 뜻이냐? 현병대에 의해 731부대의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들말이냐?
가와시마 : 정확히 그렇다.

13. 가와시마의 대답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1) 만주는 일본에게 소련으로 깊숙이 침략하기 위한 단순한 군사기지였다. (2) 일본군은 악마의 무기인 박테리아 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었다. 반공산주의와 전쟁이 악마의 무기를 신성화시켰고 731부대의 잔악행위를 정당화했다. (3) 그들은 죄수들을 단지 '실험물'로 보았고 인간실험을 계속했다. 그들은 제국일본은 아시아의 중심부이고 일본은 가장 우수한 국가라고 믿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의 국민은 동물과 같은 낫은 차원에 속하고 있다. 그러한 일본인들의 오만한 우월적 복합체는 1894, 95년의 중일전쟁 승리와 한국 침략이래로 계속 자라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한국의 독립, 문화, 심지어 성까지 빼앗을 수 있는 식민지 정책을 취할 수 있었다. 더욱이 전쟁동안 일본정부는 한국과 중국인들을 강제로 공장, 탄광 그리고 전장으로 내몰았고 심지어는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만들었다.

14.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질문해야 한다 :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731부대에 근무했다. 그들은 왜 의사와 과학자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을까? 도쿄제국대학으로부터 만주로 보내진 젊은 혈청학 의사인 아키모또 박사는 '방역급수부'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회상한다 : '나는 그곳에 도착해서 인간실험을 발견하였을 때 매우 충격을 받았다.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죄수들을 동물과 같이 취급했다. 그들은 죄수들이 실험과정에서의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비록 나의 업무가 인간실험에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우 두려웠다. 나는 서너번이나 연구부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다. 나는 만약 내가 떠난다면 비밀에 처단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중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 : (1)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양심이나 인간성은 없이 오로지 기술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일부 젊은 일본 과학자들이 사린과 박테리아 그리고 다른 치명적인 무기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오움진리교 같은 종교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 또한 신기술과 기계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들의 양심을 잊고 있다. 731부대와 오움 진리교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이 있어 보인다 : (1) 심리학적으로 오움진리교는 기술물신주의와 나치와 731부대를 포함한 일본제국 군대의 선택된 인물이라는 오만한 우월적 복합체를 계승하고 있다. (2) 일본 자위대는 '화학 생물 무기'에 대항하는 특별 부대를 가지고 있다. 일부 화학생물 무기기술이 자위대로부터 오움진리교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5.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50년의 해에 우리 일본정부와 특별히 일본국민들은 중일전쟁과 한국침략의 과거 백년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오움 사건은 일본의 문제는 단지 과거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젊은 세대의 오만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휴머니즘, 인간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세계평화가 여전히 일본에게 걸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력서

이름 : 나리히코 이또
성별 : 남
국적 : 일본
생년월일 : 1931년 10월 24일
출생지 : 가나자와, 일본
현주소 : 일본 248, 가마구라시, 오마치12, 1-12
전화, 팩스 : (81) 467-22,7554
직업 : 주오대학 교수
학력 : 1954 도쿄대학 (인문학부 독문학)
도쿄대학 신문 편집장
1960 도쿄대학 사회과학 석사 코스(국제 관계론)
1963 도쿄대학 박사코스 (독일 사회사상과 운동)

전후 독일의 과거청산문제와 신나치주의

Helga Picht (Korea Verband, 전 훈볼트대 교수)

전력

1963-1967 사가미 기술대학 부교수
1967-1973 주오대학 부교수
1968-1970 동경 외국어 문화대학 강사
1973- 주오대학 교수

학문 사회활동

1990- "포름 90년대" 공동의장
1992-1995 사회사상학회 회장
1992 아시아 태평양 평화 군축 국제 포럼 운영 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 * 전후 일본문학의 출발 (1972)
- * 반핵과 일본문학을 위한 메시지 (1983)
- * 핵무기, 빙곤과 탄압 (편) (1984)
- * 그람시와 현세계 (편) (1988)
- * 일본 전후 문학 강의 (1980)
- * 무기없는 세계를 위하여 : 변화하는 세계에서 일본 헌법 제 9조의 의미 (1991)
- * 로자 루센베르그의 세계 (1991)
- * 윤이상의 음악세계 (편) 1992)
- * 무기로 평화를 건설할 수 있을까?
- 일본헌법 제9조화 세계평화를 위한 우리의 선택 (1995)

I. 부활하는 신 나치주의의 망령

독일유대인중앙이사회 회장인 이그나츠 부비스(Ignatz Bubis)씨가 금년 4월 27일 파쇼적인 중앙감옥소 베르겐-벨센(Bergen-Belsen) 해방 50돌에 즈음한 기념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독일의 민족사회주의 (나치즘)이 범한 만행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독일에서도 나치즘 폭력 통치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제정하면 좋을 것이다."

본인은 다음날 신문에서 이 기사를 읽었을 때에 크게 놀랐다. 왜냐하면 동독의 자그마한 도시에서 1934년에 출생하여 온 생활을 동독에서 지낸 사람인 본인은 50년대 초부터 매년 9월의 첫 일요일 아침에는 동부 배르린(Ost-Berlin) 중심지의 큰 광장인 아우구스트-베벨-광장(August-Bebel-Platz)에서 반파쇼 열사와 죄없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식적인 국가 기념집회에 참가하였기 때문이다.

동독의 나이 많은 지도자들의 다수는 공산주의적인 반파쇼 투사이기 때문에 이 집회에 모두 참가하였다. 추모사의 내용은 주로 공산주의자들의 역할만을 강조하였을 뿐, 수백만 명의 희생된 유대인과 비정치적인 희생자들에 관해서는 입밖에 내지 않았다. 동시에 본인이 구 동독에서 체험한 모든 생애를 돌아보면 1945년 5월 8일을 원칙적으로 해방의 날로만 이해하고 명절로서 맞이하였다고 회상하고 있다.

본인은 학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계속 새로운 지식과 시점으로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재평가하려면 제일 먼저 역사적 사실을 엄격하게 고려하고 또 편파성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헬가 피히트(Prof. Dr. sc. Helga Picht) 여사는 훈볼트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피히트교수는 일찌기 한국학 연구를 위해 평양 유학을 했고 통독 후 번역작가로 활약 중에 있다. 최근 그녀의 번역서로는 박완서 작(그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가)을 들 수 있다.(편집자)

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그리하여 1990년에 강자가 약자를 먹는 방법으로서 서독 연방 공화국이 당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즉, 구 동독)을 흡수하였을 때부터 집권자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편파성 있게 독일 역사를 왜곡 시키면서 과소적 과거를 진짜 청산하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정책은 내 생각으로는 통일된 독일에서 민족적 자만성과 외국인 멸시, 대국주의와 나치사상을 재생시키는 주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리면 여기서 이에 관한 여러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종전 50주년 기념식과 관련, 몇 달 전부터 독일 매스컴에서는 이를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 토론이 시작되면서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을 동반하는 우익 인사들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1995년 5월 8일을 "해방기념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분단만 가져온 "국치일"로 맞이하자고 주장하였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4월 중순 반파쇼적 투사의 아들이면서 동독에서는 높은 권위를 누리고 있는 민주사회주의당(만사당,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당수인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씨는 한 모임에서 독일의 신나치즘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극우 신나치 분자인 스킨헤드(Skin Head)들은 기지(Gysi)씨와 민사당(PDS)을 지지하는 목사의 14살 난 아들을 공격, 구타를 가해 이들에게 입원 할 정도의 중상을 입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에게 더욱 주목을 시키고 있는 것은, 폭력범에 관한 한 무조건 체포하는 경찰이 이 사건에 간섭 할 권리가 없는 척 했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경찰은 금년 4월 22/23일 베르лин(Berlin) 북쪽에 위치해 있는 파쇼 중앙 감옥소 기념관에서 진행될 추모회에 참가하려는 동서독 사람들로 하여금 형식적인 여권검토 구실하에 추모회에 참가하지 못하게끔 방해하였다.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독일에서 1933년 히틀러(Hitler)가 집권하기 전에 경찰은 공산당이나 기타 좌파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반나치 투사들을 제거하는데 앞장 섰다. 다른 한편 이들은 나치폭력자들을 옹호하면서 파쇼 집권을 준비하는데 참가하였다.

이 모든 사실을 우려하면서 금년 4월 22일에 삭센하우센(Sachsenhausen) 중앙감옥소에서 해방 직후 생겨난 국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현재에 와서 민중이 히틀러 파시즘에 의하여 체험한 처참한 고통을 더욱더 무시하고, 나치만행을 정당화하며 파쇼독일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반파쇼 투사들을 비방증상하는 경향을 보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말미암아 격정스럽게도 인간경멸적인 사상, 즉 인종주의, 유태인 배척주의, 외국인 멸시와 대국주의는 다시금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통일된 독일에서 이와 같은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1990년대의 독일은 1930년대 초의 독일이 아니며, 20세기 말의 세계는 20세기 전반기의 세계는 아니다. 독일에서도 반파쇼 투쟁을 광범하게 벌릴 가능성이 있고 또 반파쇼 투사들을 제멋대로 추격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통일된 독일에서 신나치즘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민주세력은 위에서 묘사한 현상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결과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동일 행동에서 좌익세력을 1930년대초 처럼 쫓아낸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II. 한국전쟁과 냉전관리

다행하게도 통일된 독일 도처에 진짜 반파쇼적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동독 출신인 본인이 원래 서독에서 태어난 단체인 Korea-Verband(한독연대위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은 추상적인 연설을 하고 싶지 않다. 전 독일에서 한국에 대한 연대성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말하고 싶다.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공평하게 구 동독 출신인 본인은 먼저 동독에서 Korea와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였는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1950년 6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독일인의 대다수는 한반도가 어디에 놓여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동독의 젊은 세대는 한국의 지리적, 정치적 상황을 빨리 파악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광범하게 고양된 반미 사상에 근거하여 소련의 해설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북한에 대한 동정과 연대성을 물심양면으로 보냈다.

그것은 세 가지 원인에 근거하였다.

1. 좌익반파쇼 출신인 동독의 집권자들은 소련이 독일 국민을 파시즘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을 광범하게 선전하였다. 그래서 우선 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소련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였고, 소련의 편을 절대적으로 들었다. 그들은 그러나 오늘에 와서야 비로서 소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류의 진보를 대표하는 연합국이 공동으로 독일 파시즘과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스탈린(Stalin)의 비인간적인 독재로서 지배된 소련을 포함한 4대 열강은 대국주의적인 정치를 실행하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1950년대 동독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도 독일민족의 해방자로 된다"고 널리 선전 하려고 하였더라면, 그는 적어도 사회여론에 의하여 규탄 당하였을 것이다. 북한에서도 1950년대에 김 일성의 정치노선을 비판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미국이 소련과 함께 Korea의 해방자로 된 있다고 말한 이유 때문에 재판을 받은 바가 있다. 동독에서는 적어도 그런 구실 하에 재판을 받은 사람은 없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을 이러한 구실 하에 혁명의 변절자로 비판하였거나 비난한 바가 있다. 즉, 사회적 분위기는 반미 사상과 친소 사상으로 특징지워진 상황이었다.

2.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동독 사람들 다수는 1949년의 중국혁명을 민족해방의 승리로 이해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한국전쟁 간섭을 냉전의 부분인 반소와 반중국 행동으로 보았다.

3. 동독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서독보다 더욱 가혹하게 고피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의 폐허와 인간적 불행을 생동감 있게 기억하고 있다. 특히, 폭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새로운 전쟁을 무서워 하였다.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 특히 반파쇼, 반전 사상으로 길들여진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폭격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았을 때, 이 전쟁이 왜 발생 였는가에 대해 묻기 전에, 이러한 파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인민을 지지하여야 한다고 생각 했다.

그렇기 때문에 1951년에 벌써 Koreahilfskomitee (Korea원조위원회)까 결성되어 동독 내에서 민간 수집운동을 크게 조직 하였다. 50년대 동독은 유럽 내에서도 가난한 나라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독 사람들이 약 50만 루블(소련 화폐)에 해당하는 원조 물자를 북한에 보냈다.

III. 유럽에서 본 한국민주화운동

본인이 오늘 이자리에 참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연대성 운동의 결과라고 본다. 본인이 1952년 중국말을 배우려고 베르린 흄볼트 종합대학(Humboldt Universitat)에 입학하였을 때, 담당교수는 두번째 동아세아 언어, 즉 일본어나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였다. 본인은 그 때에 두가지 사실만 이해 하였다.

첫째. 일본제국주의는 히틀러(Hitler)와 결탁하여 제 2차 세계대전 중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둘째. Korea인민이 미국 침략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 곧 반제국주의 연대성을 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일본말을 배우지 않고 한국말을 배우기로 즉시 결정하였다. 50-60년대 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같은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1954년 동베르린(Ost-Berlin)에는 한국학을 독일에서 처음으로 대학수업(대학시험을 칠수 있는) 과목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흄볼트대학의 한국학부는 1990년까지 독일 내에서 가장 큰 한국학연구소로 발전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을 오늘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편파성도 많았다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동독의 한국학자들은 적어도 1970년대 중순까지 북한에서만 자료를 받았고 또 동독의 출판물과 선전자료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북한만 전진하는 나라이고 남한은 미국에 의존하는 생지옥 정도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편파적인 내용을 동독 내에서 선전하는데 참가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인은 물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민주적 낙원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동시에 사회적 분야, 특히 문화, 교육, 과학분야에는 성과가 많았다고 인정한다. 다시 말하여 동독 학자들이 범한 결함은 북한의 정치적 독재를 공공연하게 비판하지 않았고 또 남한의 다양한 발전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오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여러 의견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70-80년대 동독에는 예전과 같이 반독재 투쟁을 국제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독사람들은 민주화운동을 벌리고 있는 한국 투사들에게 항상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출판물은 1973년 김대중남치사건이나 한국의 민주학생운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선전하였다. 당시 사회여론이 반독재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특히,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의 목적에 동참 하였으며, 그 항쟁의 유혈적인 진압을 신랄하게 규탄하였다. 예를 들면 1980년 9월에 베르린 흄볼트 종합대학 한국학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일학년 때벌써 일본기자들이 촬영한 광주민중항쟁진압에 대한 기록영화를 수업시간에 보았다.

우리는 동독에서 이러한 연대성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독이 개방된 직후, 즉 1990년대초부터 베르린과 통일된 독일의 다른 지방에서 70-80년대부터 발생, 발전하여 온 여러 주독한인단체나 독일인

협회들과 협조하게 되었다. 현재 주로 한독연대위원회가 전개하는 여러 행사에 힘이 있는대로 참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93년에 베르린에서 주최한 한국문화의 날 행사, 1994년에 진행한 갑오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집회, 금년 9월에 여러지방에서 있을 광복 50주년기념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이 모든 행동을 독일에서의 대국주의나 신 나치즘 재생을 반대한 투쟁의 일부분으로 보고있다.

IV. 지구촌의 하나됨을 위하여

지금 우리들이 살고있는 지구촌엔 시공의 차가 날로 좁혀지고 있고, 주변상황도 예측을 불허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한국과 독일은 유사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들은 냉전의 억구름이 거친 오늘, 쓰라린 과거를 거울삼아 공존공영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 혹 나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그는 오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민족과 지역사회를 뛰어 넘어 깨어있는자 모두 하나가 될때, 나도 살수있고 이 지구촌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린다.

“광주 사태” 목격담 - 인류학 관점에서 본 시민항쟁

Linda Lewis (인류학자)

광주 항쟁의 이틀째인 1980년 5월 19일 월요일 오후 늦게, 나는 시내 중심가의 시위들을 멀리서 죽지커보다가 거리를 빠져 나와 나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나의 집은 도청에서 걸어서 10분쯤 거리에 있는 주택가에 있었다. 나는 뒷골목과 샛길을 따라 가야 했다. 큰길들은 줄줄이 늘어선 군인들에 의해 교차로마다 봉쇄돼 있었고 사실 차량통행이라곤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셔터를 내렸고 나머지도 속속 문을 닫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많은 옆 골목들이 중심 도로에 진입하려다 후퇴한 시민들로 꽉 차 있었는데, 이 시민들은 뼈지어 움직이며, 삼삼오오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긴장과 경악과 당혹감이 역력하였다. 내가 나의 집에 가까운 작은 상가지역에 도달해 보니 거기도 시민들로 가득했다. 불과 10분 전에 바로 그 장소에서 군인들과 시민들 사이의 맹렬한 전투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시민들을 그 거리 위쪽으로 몰아댔다는 말을 나는 들었다. 다음은 그 날 내가 써놓은 현장 기록이다.

“집에 와보니, 거기엔 채 자기 집에 가지 못한 낯선 세 여고생들이 그 날 밤을 우리 숙소에서 보내기 위해 들어와 있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국민학생 어린이가 바로 전의 [거리] 전투에서 다른 여러 시민들과 함께 죽임 당했다고 하셨다. [(우리가 사는?) 그 집의 대학생인] ‘형님’의 말에 의하면 [전남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 죽었다고 한다. 또 그는 그들[군인들이] 대학생들을 찾기 위해 집집이 가택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마치 그 군인들이 그 곳을 유치장처럼 감금하고 봉쇄해버린 것 같다.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거리로 나갈 태세이다. 이 일은 전라도에 대한 음모로 보인다. 우리들만이 통행금지 아래 지내야 한다. 그 군인들은 경상도에서 왔다. 또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재빠르다. 그들은 잔혹하고 욕설을 해대고-- 작고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찬가를 부른다. 나는 또 [내가 함께 생활하는 한국인 집이 있는] 그 곳의 싸움터를 포함한 여러 싸움터들로부터 듣기를-- 왜 미국이 무슨 일을 하지 않는가? 라는 말을 들었다. [미국] 군인들이 개입하여 이런 미친 짓을 어째서 중단시키지 않는가? ... 이 지역 사람들에게 최악의 것은 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타지역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책임자로 서울에 사는] 피터슨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깜깜 모르고 있었다. 모두가 대경실색하였다-- 마음이 아팠다. ... 참으로 소름이 끼친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도 못한다.” (내가 직접 쓴
1980년 5월 19일 현장 기록)

정말 왜 그랬을까? 7년이 지난 뒤에도 그 질문은 풀리지 않았다. 광주 시민항쟁으로부터 끄집어 냈 수 있는 의의는 무엇일까? 광주 시민항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이제 수 년이 지나서 돌이켜 볼 때 그 사건의 중대성은 무엇이며, 어떤 함축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러한 분석을 위해 나는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인 참여하는 목격을 통해 모아진 독특한 종류의 자료를 동원하였다. 내가 1979년-1980년에 한국의 법제도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현장으로서 광주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시각에 따라서는 불운이겠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도, 1980년 5월까지 나는 인류학의 입장에서 무장항쟁을 잘 목격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론 틀을 찾아내고 학술적 관점을 찾아내서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자료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다. 인류학자들은 보통 시민항쟁들을 연구하려 나서진 않는다. 오히려 필연적으로, 현장에서 모아진 자료는 일상생활 속에 일정한 유형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이다. 그래서, 특이한 것을 관찰하고 뜻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으로서의 인류학자는 뜻밖에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들을 인류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폭력에 의한 저항과 무장항쟁에 관한 인류학적인 관점들은, 그 주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그렇듯이, 긴 기간을 다루는 이론들을 지향한다. 그런 연구는 특정 사건들에게 의미를-- 그리고 대개는 명료한 해답을-- 주기 위해 수십년이라는 역사 맥락을 필요로 한다.¹⁾ 반란은 혁명 및 사회변동의 커다란 맥락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류학자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폭동은 농촌지역의 변화하는 경제관계들 속에서 비롯된다.²⁾ 농민반란에 대해서는 많은 점이 알려져 있지만,³⁾ 탈농민 사회의 항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주의 사례와 같은 20세기 후반 도시 항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⁴⁾

나는 여기서 광주 사건에 관한 인류학적 의미를 찾는 수단으로 광주 자료에 대해 그 단기간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미시 사회학의 관점인데, 광범위한 정치 맥락은 상관하지 않고, 도시의 항쟁 군중을 각기 다른 집단들로 나누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해서 실제 주민들을 구별하고, 누가 어느 정도로 무슨 이해관계로 참여했는가의 관점에서 대중 참여의 성격을 보다

1) 혁명들에 관한 문헌들은 많지만, 존 월튼이 국민 항쟁들에 관한 글에서 적은 것처럼, “혁명이론은, 그것이 극소수의 역사 변혁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짧거나 고전적인 투쟁 및 혁명의 선상에서 분류될 수 없는 대규모 저항들에 관한 연구는 피한다. 만일, 전개상의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의 혁명들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전혀 새로운 경로를 거친다면, 그 혁명들은 격하되어 이론화의 변방에 위치하게 된다-- 혁명이론의 테두리에서 떨어져 나와 거기만큼은 풍부하지 못한 분석전통 테두리에 속하게 된다.” 혁명들과 그 밖의 다른 집단저항 형태들 사이의 일반적인 구별에 관한 논의를 보려면, 내키지 않은 반역자들 (뉴욕: 콜롬비아대학교 출판부, 1984), p. 3. 마크 해고피언, 혁명 현상 (뉴욕: Dodd, Mead, and Co., 1974)을 참고할 것.

2) 예들 들어, 에릭 올프, 20세기의 농민전쟁들 (뉴욕: Harper and Row, 1969).

3) 농민과 혁명에 관해 잘 다룬 논의와 요즘 들어 점점 늘어나는 문헌들을 참고하려면, 쎄다 스콕필, “무엇이 농민들로 하여금 혁명을 하게 하는가?” 비교 정치학, 14권 14호 (1982), pp. 351-75를 볼 것.

4) 조셀 구글러, “현대 혁명들의 도시적 성격,” 비교국제발전학, 17권 2호 (1982), pp. 60-73.

자세히 살펴 보았다. 다른 한 가지 접근은 그 시민항쟁을 하나의 폭력 상황으로 보고, 희생자들의 편에서의 합리화 과정에 관심을 둔다. 민중은 이 사건에서 무슨 의미를 발견했을까? 시민 자신들은 무슨 평가를 하며, 그 폭력사태에 관하여 그 때 당장은 물론 나중에도 어떻게 이해했을까?

광주 시민항쟁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의 “대중적(민중적)” 성격이다. 내가 목격한 바에는, 도시 전체가 그 사건에 참여하였으며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였다. “참여”란 10일 동안의 기간의 어떤 시점에서, 중심가 광장⁵⁾에서 열린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거나, 학생 저항대들에게 음식이나 돈을 주거나,⁶⁾ 거리 전투에 가담하거나, 무기를 획득하여 갖고 다니거나 어찌 했든지 간에,⁷⁾ 항쟁을 지지하는 표시를 한 행위를 의미한다. 나는 그 항쟁에 대하여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 보지 못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 도시를 참으로 떠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항쟁 민중의 정서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참여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꺼려서 그 사태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또한 역반란이나 항쟁을 반대한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적대 시민 집단들 사이의 무슨 물리적 투쟁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 항간에 알려진 바인, 과격한 학생 지도부와 보다 온건한 시민 위원회 사이의 의견 불일치는 그 무장항쟁 자체의 근본적인 “의로움”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군부와의 협상과정의 전술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기 때문이다.⁸⁾ 사실, 그 항쟁에 대한 대중 지지가 너무나 광범위했기 때문에 보다 관심 있는 질문은 누가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가 될 것이다.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는 일반인의 참여의 수준을 넘어서 생각할 때, 그 항쟁의 주요 참여자들을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참여의 성격, 범위, 시기,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이다.

기존 유대관계들에 기초하여 기존의 (사회적으로 인식된) 행동 경로와 공공 저항방식에 따라 동원이 이루어진 집단들이 있었다. 이 집단들은 대체로 정부정책, 특히 1980년 5월 18일 전에 내려진 계엄령에 대항하여 활발하게 참여했다. 이 집단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이들이 대학생들이었다. 한국의 학생들은 오랜 반정부 시위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저항을 지도적으로 공표하는 적임자들이었다.⁹⁾ 이 부류

5) 도청 앞의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데, 광주 시내의 중심지역이자 1980년 5월 24-26일의 반정부 대중집회의 현장이다.

6) 그러한 “병참” 지원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 같았다. 우리 이웃에 사는 여성들 가운데 3인이 학생 저항대들에게 줄 음식을 집집을 돌며 모았으며, 그보다 전에 나는 한 무리의 여성들이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 김밥을 싸서 상자에 넣는 것을 보았다. 5월 26일, 나는 시장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 --용의 자들을 형사 법정에 실어나르는 차량이었는데 이제는 조화로 장식되어 영구차로 쓰이는-- 녹색 “범인 호송차량”이 와서 서더니 네 학생들이 뛰어 내렸다. 그들은 장례대표단으로서 경비 모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부금을 간청하지 않아도 되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우르르 몰려가더니 천원짜리 지폐를 그 학생들의 손에 쥐어 주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내 생각에 그 학생들이 불과 5분 안에 15만원 (약 250달러)를 모금했다고 여겨졌다.

7) 1980년 5월 22일자 뉴욕타임즈를 참조할 것. 그 신문은 저항대들이 3,500자루 이상의 무기와 46,000발 이상의 탄알과 무장차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 계엄사령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시의 인구의 25%에 달하는) 20만으로 추산되는 시위대가 거리에 나와 있다고 인용하였다.

8) 시민위원회의 나님에 대해서는 심재훈, “총성이 폭동을 끝낸다,”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1980년 5월 30일자, p. 10 참조.

9) 한승주, “학생 운동: 1960년 봉기와 1971년 저항운동의 비교,” Chung Lim Kim (편), 한국에서의

의 다른 집단들은 교회 및 다른 시민단체(예를 들어, YMCA와 YWCA)의 구성원들과 지도자들이었는데,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저항을 활발히 해온 이들이었다. 바로 이 집단들이 그 항쟁의 지도력을 이루었다.¹⁰⁾

그러나 시위대들의 대부분-수적으로 단연 가장 거대한 부류로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항쟁의 처음 몇 날 동안 거리시위를 한 수만명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들 대부분이 무장하지 않았으며 다치기를 원치도 않았던 이들-은 개별적으로 나선 것이며 기존의 집단행동 경험이라는 경로를 통해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몸소 폭력사태를 목격하거나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집부근의 거리투쟁에 그 항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수를 이루는 이 부류- 그 항쟁의 “군중”-에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그들이 계급적 제휴와 같은 기존 노선들을 따라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가담자라는 딱지가 붙지 않은 기득권적 이해에 기초하여 처음에는 행동을 억제하였던 이들이 있었다. 이 범주에는 우선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관리들이 (판사들, 공무원들, 학교관리자들- 이들 대부분이 공공의 신뢰를 받는 지위에 있는 이들이었다) 들어 있다. 이 사람들이 그 항쟁이 표현하는 노여움과 목표에 대해 반대한 것도, 그 항쟁이 궤멸되기도 바란 것도,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한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선생님이었던 어떤 이가 5월 24일 나에게 설명한 것과 같다.

“왜 우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무개씨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시내는 지금 안전하고 가게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당국 (즉, [머리 위를 빙빙 날아다니며 전단을 뿌리는] 비행기에 탄 녀석들이 우리 더러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고발될 것입니다.”¹¹⁾

그 항쟁이 어쩔 수 없이 끝나게 되고 정부가 통제를 회복하게 되고, 만일 그들의 시위가 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들의 지위는 위태롭게 될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그 항쟁에 대해 자신들의 지지를 좀처럼 공개적으로 보여주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이상과 같은 부류의 참여자들이 그 항쟁의 여러 국면에 참여하였다. 그 사태는 계엄령에 반대하는 학생시위로 시작되어, 5월초에 시작된 전국에 걸친 지속적인 학생시위의 일부인 일련의 거리시위로 발전하였다 (광주의 거리시위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것들이었다). 그 전 주간에는 서울에서 큰 시위들이 있었으며, 타도시의 학생들에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광주의 학생들은 -5월 18일에도 시위를 계속하자고 합의

정치참여 (산타 바바라, 캘리포니아: Clio Books, 1980), pp.143-161.

10) 그 봉기에 대한 책임으로 나중에 구금당하고 고발당한 광주시민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 교수들, 변호사들, 그리고 YMCA/YWCA 지도자들이었다. 몇몇은 시민위원회 위원들로서 학생들과 군부당국 사이에서 활발히 협상을 벌였지만 구금당했다. 그 봉기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 커뮤니케 34호 (1981년 5월 10일) (도쿄: 한국문제에 관한 일본기독교 비상협의회, 1981)을 참고할 것.

11) 1980년 5월 24일, 내가 직접 쓴 현장 기록.

한 것 빼놓고는- 두드러진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¹²⁾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록 학생들이 최초의 참여자들이긴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처음 며칠 시위를 벌인 많은 학생들이 폭력사태가 벌어지자 몸을 숨겼다 (종종 그들의 부모님들의 명령을 듣고).¹³⁾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후에 자신들도 죄인으로 색출될까봐 두려워 시위를 하고 그 뒤에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거리에 나선 것은 그 학생들에게 조심하라고 일찌기 충고했던 부모님들이었다. 대학생인 자기 아들의 시위활동을 염려한 한 여성은 5월 14일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정부가 나쁘다는 점에 대해 내 아들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더러 시위에 나서지 말라고 한다. 그는 다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학교에서 퇴학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⁴⁾ 며칠 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집에 갇혀 있는 동안 시위하는 데 나가 참여하고 있었다. 그 사태를 전반적으로 볼 때 활발하게 움직이며 무장한 참여자들은 바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집단의 학생들이었다.

5월 19, 20, 21일에 잇달아 일반 시민으로 이루어진 최대 숫자를 차지하는 부류가 참여하면서 상황은 두 번째 단계였던 시민항쟁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무엇이 처음 며칠 동안의 대부분의 거리투쟁을 야기 시켰는가에 대한 설명의 한 방편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는데, 그것은 학생시위를 진압할 때 보여준 정부군의 잔혹성에 대한 민중적 분노의 표현이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거리투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초기 며칠 동안은 전적으로 불참하기란 어려웠다. 사람들은 보려 나갔다가 거리투쟁에 섞이기도 하고 거기에 가담하기 위해 나가기도 하였다. 군인들의 잔혹성을 보고 격분했지만 다칠까봐 감히 거리로 나서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음식이나 돈을 주는) 다른 방식으로 참여했는데, 그 시위가 끝나자 마자 물리적 위협이 닥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시위를 한 셈이었다.

대중적 참여의 두 번째 단계는 5월 23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 그 세 번째 단계에는 군대가 그 도시의 중심부로부터 물러나고 (군중집회 형식으로) 비폭력 시위가 일어나 숫자상 그 절절에 달하였다. 이 세 번째 단계의 두드러진 면은 새로운 노여움의 출현이다. 그 노여움은 (처음에 주저하다 참여한 사람들의 부류인) 나머지 시위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작용하였으며, 사람들을 거리에 나와 있게 하고 그 도시 내의 저항정신을 강화하여 그 항쟁을 연장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 두 번째의 노여움이 없었더라면, 그 시민항쟁은 아마 며칠 간의 거리투쟁 뒤 봉체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그 노여움에 대하여 정부는 사과하는 지도 않았고 그 처음의 폭력사태를 야기시킨데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아직도 여전히 그렇다). 항쟁에 나선 민중들은 정부군의 진압행위에 맞서서 거리로 나섰고, 정부가 그들을 불량배, 무법자, 낙인을 찍어도 거리에 줄곧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산당 따위로 낙인을 찍어도 거리에 줄곧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들조차도 자기 직업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공공연히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2) 그 이전의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려면, 더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1980년 5월 20일자를 볼 것.

13) 대학생으로 오인받을 것을 두려워한 많은 젊은이들도 그리하였다. 그래서 시내로 걸어가다 불잡힌 젊은이들에 대해 군인들이 가한 무차별 폭력에 관한 말들이 5월 19일-20일에 너무나 확 퍼졌기 때문에 지방법원에 근무하던 젊은 남자직원은, 예를 들면, 가까이에 있는 도심지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였다.

14) 1980년 5월 14일, 내가 직접 쓴 현장 기록.

엘리자베스 페리가 암시하듯이, 항쟁에 참여한 개인들은 “뜻하지 않은 사건과 인간의”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보여준다.¹⁵⁾ 아마도-한국에서의 격렬한 도시 항쟁의 계절에-광주를 색다르게 만든 것은 바로 공수부대의 잔혹성이라는 뜻밖에 부딪힌 사건과 인간의 충분한 의지가 결합하여, 계엄령의 발효와 군부독재로의 회귀(그래서 민주 개혁으로부터의 이탈)에 저항하는 형태를 띠었다는 점이다. 5월 27일 무장한 정부군이 시내로 다시 진주하면서 봉궤된 그 항쟁은 지도력의 실패, 또는 민중적 지지의 허약함의 징조가 아니라 정부가 그 항쟁을 진압하고자 기꺼이 무력까지도 사용하는 지경까지 나아갔다는 점에 대한 냉엄한 평가로 보아야 한다. 광주 시민항쟁은 통제를 벗어난 집단 폭력의 한 예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대중적 참여가 절절에 다달았을 때, 광주 시민항쟁은 폭동(반란)의 일반적인 성격과는 다른 성격을 보여주었고, 분명히 그것은 평범한 도시 폭동이 아닌, 질적으로 복합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면 많은 것을 근거로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폭도(반란)들에게 보통 따라다니는 “제한된 이해관계,” “뒷눈질,” “저급한 이념” 등의 딱지가 광주 시민항쟁에 어느 정도 해당되느냐이다(Hagopian, 12쪽). 광주항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드러진 역사적 사건이다.

(1) 광주 시민항쟁은 (예를 들어, 도시 노동자와 같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시민을 두루 아울러 포함하였다

(2) 광주 시민항쟁 동안 사유재산의 파괴가 없었으며, 사람 및 재물에 대한 반군 측의 폭력은 특정한 정부관련 목표물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¹⁶⁾

(3) 광주 시민항쟁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서 인정 받게 되는 국민 운동의 일부인 지도력을 보유하였다. 그래서 -그 시민항쟁 자체가 두 차례의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노여움에 의해, 곧 시위대를 진압하는 정부의 잔혹성과 정부가 자기 행위들에 해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실수에 의해 불붙는 동안-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보다 추상적인 정치 목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광주 항쟁에 대한 두 번째 접근방법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그 사건의 폭력성의 해석, 즉 피해자-이 경우, 광주 시민-의 쪽에서 그 당시 행해졌던 폭력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고 싶다. 민중들이 이 해석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 민중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해석에서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과, 자신들의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부분들을 정당화, 설명, 또는 변명할 것들을 찾으려고 하였는가? 그들이 보고, 듣고, 행했던 일들에 대해 민중들은 어떠한 해석을 하였는가? 광주 항쟁의 과정에서 세 개의 주요한 ‘의미’ 또는 해석이 되풀이되어 나타났다.

첫 번째 설명은, 당시 처음 사흘동안 확실히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잔인성을 보여주었던 공수부대원들이 광폭하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마약, 약물 복용, 음주, 수면 부족과 굶주림 등으로 초기의 내 취재 수첩이 보여주는 것처럼, 공수부대원들이 일요일 오후 광주 시내에 나타나기 위해서 특별

히 선택되고 ‘준비되었다’는 이야기가 시내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쉴 때 술냄새가 났으며,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한 한국인 기자가 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나중에 나는 학생들에게 불잡힌 공수부대 원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왜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사흘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광주로 오기 직전에 소주를 마시게 되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을 진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내게 말했다.¹⁷⁾

공수부대 원들에 대한 이러한 소문과 진술의 기이함에는 민중들이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반영되어 있다. 군인들의 약물 중독은 희생자들의 무고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군인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잔인하다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자극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그럴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된다. 또한 공수부대원들이 소문대로 다른 지역에서 온 ‘적’이라거나, 박정희의 지지자이라거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김대중의 반대자들이라는 사실도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게다가,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폭하게 만들어졌고, 술을 마셨으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사건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그 가해자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가정을 필요로 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찾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의미는 약물에 중독 되어 미쳐 날뛴 군인들의 이미지에 있었다.

내가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두 번째 “해석”은 항쟁 기간 중에 표명되었고, 무장 저항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정부의 행동을 북한 공산주의자나 식민지 시대의 일본인의 행동과 동일시한다. “어떻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것보다 더한 행동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이야기를 맨 처음 들은 것은 어떤 판사에게서 였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쓴 5월 22일의 선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노인들은, 이 잔인한 학살을 보면서, 한국 전쟁 때의 공산주의자들보다 더하다고 말했다.”¹⁸⁾ 한 중인의 보고서에서는, 과거와 비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의 정치가들은, 어떠한 저항도 단순한 무력 사용과 살인으로 누를 수 있다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그릇된 믿음에서 깨어나야 한다.”¹⁹⁾

나는 이렇게 일본이나 북한 점령자들의 활동과 비교를 하는 것은 정부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유사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한 죄악의 것 즉 일제와 한국 전쟁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죄악의 것 즉 북한의 통치를 생각해야 했다. 도대체 어떤 정부가 민간인에 대해 그러한 무력으로 대응한단 말인가? 위의 두 예는 한국 사람들에게 폭

15) Elizabeth Perry, Rebels and Revolutionaries in North China, 1845-1945 (Stanford: 스텐포드 대학 출판부, 1980), 252페이지

16)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나는 5월 23-26일 동안 시내를 걸어가면서 어떠한 약탈이나 폭행행위도 보지 못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정부 건물들 즉 내가 지나쳤던 모든 경찰서와 초소, 그리고 지방 세무서가 파괴되었다.

17) Reports from Kwangju (Washington, D.C.: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1980), 6쪽

18) 위의 책, 18쪽

19) 위의 책, 15쪽

력과 억압,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힘의 사용으로 정권을 잡고 이를 유지하는 정부를 대표한다. 그러면, 광주항쟁의 참여, 특히 5월 24-25일에 있었던 대규모 반정부 집회는 정당하지 못한 힘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 합리화된다. 광주 시민이 아닌, 정부 관리들이 범죄자였던 것이다.

마지막 의미는, 미국 정부가 무장 대결을 막기 위해 활발히 개입할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는, 자주 반복되는 기대에서 찾을 수 있다. 나 자신은 미국에게 이 도시를 지킬 책임이 있었다는 빈번한 의견에 화가 났고 혼동되었다. 항쟁 기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 그 뒤 몇 달 동안의 내 기록에는 초기의 미국의 지원에 대한 기대와 훗날 그 지원이 없었던 대안 놀라움, 통한을 표출하는 내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5월 20일에 나는 친한 한국인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그는 내가 당시 광주 미 문화원장이자 한 사람뿐이었던 광주의 미국정부 관리인 밀러를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친구: 밀러는 정말 나쁜 놈이다. 그는 서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나: 하지만 그는 연락하고 있는데..

친구: 아냐, 만약 연락을 하고 있다면 미국이 무엇인가를 할거야.²⁰⁾

항쟁기간동안, 확실한 미국의 행동이 없었다는 것은 서울의 미 대사관이 남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생각은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폭력을 막아줄 것이라는 확신 (내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그러나 내게는 너무나 순진하고, 환상적이기까지 했던)에서 온 것이었다.

왜 광주 사람들이 미국의 개입을 예상했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분쟁을 결정짓는 유형을 알아보아야 한다. 폭력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열쇠는 무엇보다 더 평범하고, 정상적인 비폭력적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분쟁 적인 상황에 접근하고 이를 처리하는 일반 과정이며, 논란거리가 해석되고, 진전되고, 결정되는 한국의 대결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한국사회 분쟁의 본질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류학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싸우는 소리와 분노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 있다.”²¹⁾라고 하여, 그 분쟁의 공공성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마땅한 Vincent Brandt만이 예외가 될 것이다. 사회적인 과정으로서, 분쟁 결정에 관한 한국의 문화 시나리오는 양쪽이 불만을 공공연히 표현하는 것을 수반한다. 이웃들에게 이를 알리고, 지역적인 동의를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논쟁에서 각 편이 대중적인 지지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또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제 3의 중재하는 집단의 개입에 상당히 의존하는 과정이다. 사실, 논쟁에 대한 공공의 분위기를 통해 적대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거리에 서서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군중이 모여든다. 손찌검이 시작되면, 구경꾼들이 나서서 둘을 억제시키고 언어적 공격성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싸움을 중지시킨다. 같은 식으로, 화가 난 땅주인과 똑같이 열받은 소작인이 마당에 서서 돌아가면서 비난을 하

20) 개인 취재 수첩, 1980년 5월 20일

21) Vincent S.R. Brandt, A Korean Village: Between Farm and Sea (Cambridge: 하버드 대학 출판부, 1971) 185 쪽

는 독백을 한다. 이웃들은 듣고 있고, 다음날 그들은 소작인이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을 한다. 집중적인 언어 공격과 불만의 공공 표출은 물리적 폭력의 전조가 아니라 이러한 논쟁의 가열을 막기 위한 제 3자의 개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개인간의 논쟁으로 집단 정치 행동에 적용하여 어떤 모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 시나리오의 안에서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 며느리가 문밖에 나와서 어두운 밤을 향해 불만을 털어놓는 것처럼, 광주의 민중들은 그들 편의 이야기, 그들이 정부로부터 잘못된 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공적으로 표현했다. 처음에는 방어적인 무장 저항으로, 그리고 나서는 도시의 중심에서 열린 대중 집회와 공공 시위로 표현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것이 그들을 대신할 개입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자 놀랐다. 불만의 공적인 표현은 개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개입이 없었던 것은 문화적인 기대를 혼동시켰다. 그리고는 분쟁의 해결 수단을 불확실하게 남겨두게 된 것이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관찰이 가능하다. 광주항쟁과의 역사적 거리가 멀어지고 그 사건이 시간 속에서 희미해지면서, 새로운 통찰과 사실적인 정보에 바탕을 둔다면, 희생자들의 편에서 본 광주의 해석이 재조명될 수 있다. 그러나 광주항쟁은 희생자들의 무고함과 정부 행동의 불법성, 개입하지 못한 미국의 책임 등에 대한 재해석이 계속 주어질 것이다. 또 실제로 현 한국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해석”은 광주항쟁 자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 이 글은 『광주 민중항쟁 : 남한 정권에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 (두번째 찍어내는 판. 도널드 N. 클락 역음. 웨스트뷰 출판사, 1988)의 15쪽부터 번역한 것임.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인권현황과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Etienne Mbaya(인권운동가, 독일 쾰른대학 교수)

인권은 전인류의 유산이다. 인권의 영역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생각일 수 밖에 없다. 대조적으로, 역사적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몇몇한 양심을 나타내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인권은 국가, 권력, 사회경제적 힘 그리고 개인과 단체들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 판결이나 용인(시인)에 의한 침해가 있다. 이러한 침해 중 어떤 것들은 '구조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데 이것들은 특정 국가들에서만 일어난다기 보다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살인"-이 공식은 이미 70년대에 인권단체인 '국제 사면위원회'가 아프리카에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국제 사면 위원회'는 많은 나라에서 이미 넓게 확산된 자기 나라 국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정부의 테러에 대해 주지시킨 바 있다.

독일인의 일반 의식 속에서 삶이나 개인의 신변 안전과 같은 기본권에 대한 생각들은 제 3세계 나라들의 경우와 관련 지어지는 경향이 많다.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상황은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탄압과 함께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 나라의 국민들은 심지어 사회적 권리 조차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고난, 낮은 임금, 실업, 문맹, 낮은 주택 보급률, 보건교육의 부족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적이나 국제적인 갈등에 의해 파생된 정치, 경제, 사회구조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문제와 관련하여서 국가 내부의 한계와 폭력의 계속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과학자들은 '종속이론'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는 직무를 수행하는 엘리트들이 자기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면서 그들 자신이나 선진산업 국가들의 특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만 행동을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요인을 감안해 볼 때 개혁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를 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고 따라서 인권의 침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

피할 것이다. 하지만, 관계되는 나라들에서 변화에 처음 불을 붙이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는 보다 많은 인권침해를 야기 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잠재하여 있던 정치적, 사회적 갈등들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 목사, 그리고 노동조합 지향적인 정치인등 변화의 주체가 될만한 사람들이 아주 흔히 인권문제의 희생자가 된다는 느낌은 과거의 역사 속에 잘 예증되어 왔다.

동시에, 이들 나라의 지배자들은 그들의 공식행위들이 정당성을 인정받게끔 강요되고 있다. 이것은 법률적인 수단을 넘어선 보다 다양한 국경을 만들어냄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려는 시도의 현실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 단결기구의 인권문제 대표자회의'도 여전히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실패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고 자유와 발전을 보장하라는 민주적 제도들을 선택함으로 해서 식민제도를 타파하기를 열망하였다.

하지만 독립이된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유와 투쟁에 대한 목표를 상실하고 그들 국민의 꿈과 희망을 저버렸다.

민주주의는 소수지도자들의 선언적 의미로 축소되고 신뢰할 수 없는 헌법의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제정으로 탄생하였다. 그동안 많은 부족민의 혜개모니 쟁탈에 의한 쿠데타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많은 암살과 처형들로 죄없는 희생자를 낳았으며 이것들은 아프리카 전 대륙에 대해 커다란 오점과 탄식을 초래했다.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화에 대한 투쟁에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만이 사회와 시민들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제적이며 정의로운 반전을 보장한다.

덧붙여, 이것은 독재의 철폐와 국가의 독립성의 실현, 자격에 의한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 자리들의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세의 지배에 의한 모든 제도를 없애는 일들을 모두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공공 문제를 다루는 제도를 만드는데 그리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함을 의미한다.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가 아프리카에서 사회적, 정치적인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부패와 친척 등용을 비난하는 전단이 갑자기 도처에서 나타났다.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실 경영이나 자기영달의 문제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들추어지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추방하려 노력하고 있다.

1990년 7월에 개최된 OAU의 2차 정상회담에서 민주화에 대한 주제가 처음으로 토의되었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태도는 그들 강대국들의 경쟁에 의해 그들의 관점으로 특징지워졌다. 제도들 간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 심지어 부패한 독재자들도 지지되었다.

불행히도 기회주의적인 이유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 은행이나 서구의 불충분한 원조를 고려하여, 이제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건하에 원조 프로그램과 같은 경제적인 권고들이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의 존중과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정치적 권고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현 지구촌에서 주요한 정치제도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를 흉내내거나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싶지는 않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우리 문화와 실정에 적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은 강한 바람이 있다는 것이다.

○ 아프리카 벨기에령 콩고에서 탄생.

○ 파리 소르본느대, 프라하의 찰스대, 캐나다의 케벡 왕립대 수학 하였고 이들 대학에서 법학 및 정치학 박사, 철학 및 사회심리학 박사, 사회학 및 인문학 박사 취득.

○ 현재 독일 Univ of Cologne에서 비교법과 인권을 가르침.

○ 현재 UNESCO국제 고문으로 활동.

○ 아프리카의 독립, 인권이나 독재문제의 국제적인 권위자.

아르헨티나에서의 반인륜적 행위 그 청산

Cleina Z. de Kofman(5월광장 어머니회 소속)

1977년 4월 30일 실종된 자식들을 둔 14명의 어머니들이 이곳저곳 그들을 찾아 다니는 것에 지쳐 불안과 절망에 찬 나머지 독재자 Jorge Rafael videla에게 우리의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서신을 건네 줄 목적을 가지고 정부청사앞에 위치한 5월광장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코 광장에서의 모임을 중단하지 않았다. 암살자들과 고문자들의 법정소환과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 및 감금을 요구하면서 매주 목요일 3시 30분이면 언제나 그곳에 모인다.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막대했고, 우리의 투쟁을 이해해 주는 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도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동일한 슬픔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모여 서로 단결하여 5월광장 어머니회의 힘을 키우게 되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다.

자식잃은 애달픔이 승화하여 투쟁심으로 바뀌었고, 단순히 내 아들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개개인의 어머니 마음이 한데 모아져 모든 실종된 짧은이들의 어머니로서 입장을 고수, 모성애를 사회화하여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다. 곧 사회분쟁의 旗를 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주장이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결국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여러사람과 단체와의 交流가 이루어졌다.

18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양심을 돈으로 사서 입을 막아 지난날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묻어 버리려는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그럴때마다 우리의 주장과 외침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함께 더욱 강하게 울려퍼진다.

1. 학생자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즉, 결코 투쟁을 중단하지 않겠음을 시사함)

우리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할 것인데, 이는 곧 우리 아들, 딸들의 죽음을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암살, 납치, 고문을 누가 명령 했는가를 밝히지 않는 한, 또한 그러한 천인공노 할 죄악을 저지

른 범죄자들이 형벌을 받지 않는 한 결코 자녀들의 죽음을 受容하지 않겠다.

(CONADEP : Consejo Nactonal de Desparecidos의 약자 Alfonsin 정부에 의해 창설된 정보기관)

무엇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자녀들의 죽음을 인정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실종사건과 관련한 책임자의 규명과 처벌을 해야만 하는 정부가 당면한 막대한 책임감에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이다.

2. 학살자는 감옥으로

이것이 민중이 바라는 그들에 대한 형벌이다. 정부기관에서 행한 재판과 처벌의 결과는 단지 4명의 살인자에 국한됐는데 이를 용납할 수 없다.

3. 정치적 이유로 인한 留置人에게 자유를

민주정부라 자칭하는 체제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 정치범을 監獄에 유치할 수 없다

4. 사체 발굴 거부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가 그로 말미암아 실종자들의 문제를 묵인화함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죄없는 시민들에게 행한 그들의 비인륜적인 학살을 부정하고 국가치안을 위하여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돌리어 시민들의 죽음을 파렴치한 거짓말로 정당화 하려는 것이다.

5. 경제적 보상을 바라지 않음

우리자녀들의 생명에는 가격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계획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의 경제적 보상을 수락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故人們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행사거부

우리는 故人們을 기리는 기념비나 비석을 거부한다.

그들을 땅에 묻는 것은 그들의 투쟁역사를 묻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또한 항거하다 처참히 쓰러져 간 이들 热沙들의 비운을 생각할때 받아들일 수 없다.

5월 4일 우리는 정부청사 앞 5월광장에서 수백만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인자들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판결을 실행했다.

정중하고도 감격에 찬 침묵속에 판사, 검사, 증인들에 의해 실종관련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제안 됐

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들에게 결코 말을 건네지 않음

-살인자, 고문자와는 대화도 토론도 하지 않음.

-그들의 협직에서의 퇴각을 강력히 요구

A) 관련자가 특정사업에 종사할 경우

-그와의 대화나 모임을 포함

-합동모임에서 그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음

-지역의 이웃, 상인, 동업자에게 그가 바로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임을 알리어 대중으로부터의 격리를 요구함.

B) 살인자와 고문자가 바로 교회, 예배당, 교구에서 신부신분일 경우

-죄없는 결백한 사람들이 훌린피로 인해 더럽혀진 손으로 거행되는 미사거부

-교회당국에 그들의 협직박탈과 신부신분으로부터 퇴진을 요구

C) 관련자가 병원이나 보건협회에 종사할 경우

-그들이 행하는 진료거부

-다른 환자에게 그의 과오에 대해 알림

-병원원장이나 관련당국자에게 그들의 퇴진을 위한 監查요청

-국민앞에 그들의 즉각 제명처분을 강력히 추진

D) 관련자가 어느 공·사립교육기관에서 교육자의 신분으로 종사할 경우

-그의 만행과 관련된 사실을 기관에 알림

-교육위원회, 조합단체, 학부모에게 살인자의 가면을 쓴 그의 본체를 들추어 알림

위와같은 요구 사항과 함께 우리는 살인자들의 죄를 사면하는 법을 허용하는 정부관료들에게 우리국민은 그것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우리 5월광장 어머니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훌린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규와 함께 계속해서 광장은固守할 것입니다.

천인공노 할 만행을 저지른 살인범들은 용서할 수 없다.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의 항거와 투쟁.